

2019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2018. 11.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목 차

I. 녹색제품 구매지침 개요	1
1. 목적 및 근거	3
2. 기본방향	3
3. 의무구매 대상기관	4
4. 추진 체계	4
II. 녹색제품의 구매	5
1. 녹색제품 개요	7
2. 녹색제품 의무구매	9
3. 녹색제품 구매절차	12
4.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제출	16
5. 그 밖의 사항	19
III. 행정사항	25
[붙임 1] 녹색제품 구매촉진 관련 법률 및 정책	29
[붙임 2]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현황	52
[붙임 3] 녹색제품 구매 수범사례	59
[붙임 4] 녹색제품 대상품목 현황	67
[붙임 5]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시스템 사용방법	72
[붙임 6]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녹색제품 구매하기	101
[붙임 7] ‘녹색장터’를 통한 녹색제품 구매하기	104
[붙임 8] 녹색제품 관련 FAQ	105
[붙임 9] 조달청 녹색제품 구매실적 조회방법	112
[붙임 10] 녹색제품 구매촉진 표준조례(안)	114
[붙임 11] 권역별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21
[붙임 12]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시스템 운영	123
[붙임 13] 녹색건축인증제도	124



I. 녹색제품 구매지침 개요

II 2019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I. 녹색제품 구매지침 개요

1. 목적 및 근거

□ 목 적

-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이행 지원**
- 또한, 녹색제품 의무구매 범위·절차, 녹색제품 정보·구매방법, 구매실적 집계·공표,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자주 질의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시 종합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관련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제6조)
-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제7조)
-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년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하고,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공공기관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0조)

2.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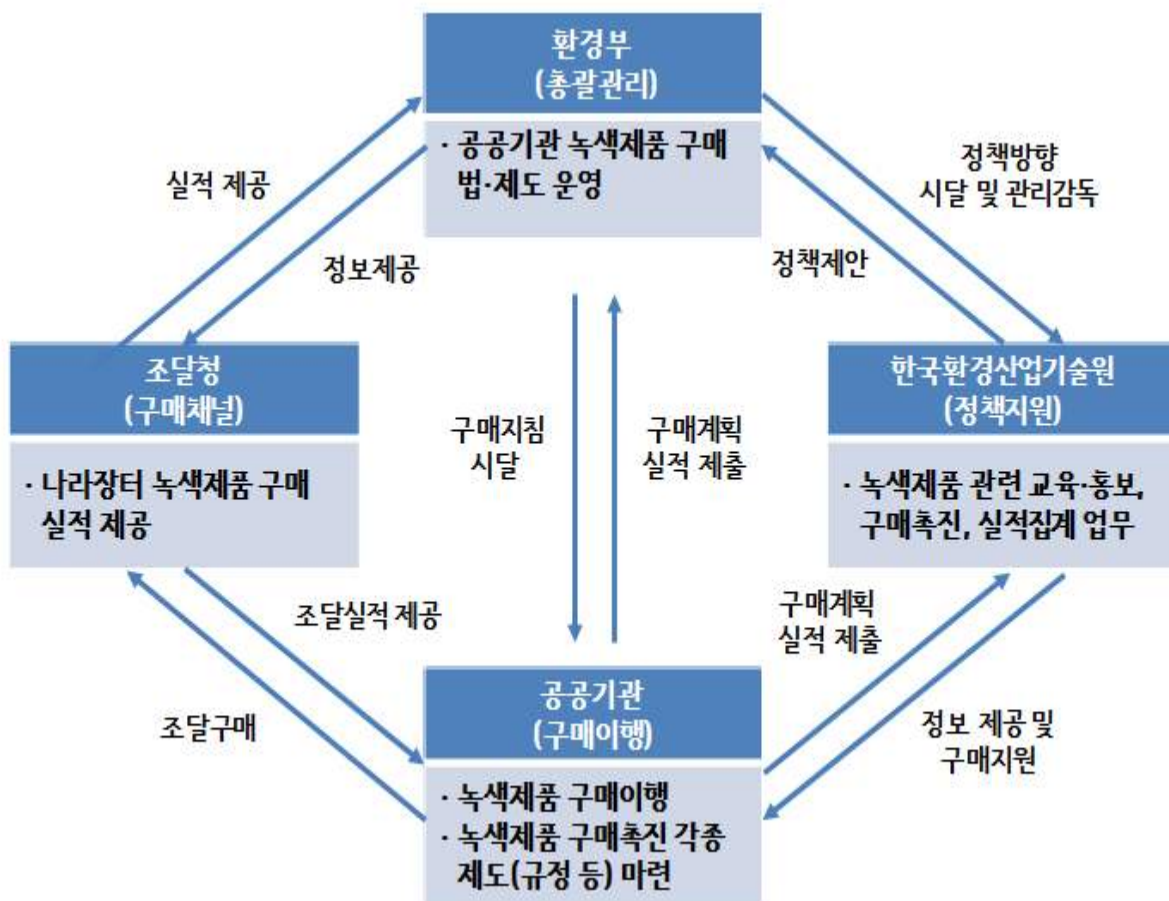
-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구매절차,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집계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지원
- 녹색제품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녹색구매실적 기관평가지표 및 수범사례** 등 다양한 구매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물품구매 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3. 의무구매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현황은 <붙임 2> 참조

4. 추진 체계





II. 녹색제품의 구매

II 2019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

II. 녹색제품의 구매

1. 녹색제품 개요

□ 녹색제품의 정의 및 범위

-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으로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마크)**를 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GR)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 기준에 적합한 상품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우수재활용(GR) 인증제도>

구분	환경표지 인증	우수재활용(GR) 인증
표시		
운영 목적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 (KS 품질 이상 만족)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인증
대상 품목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여가용품, 가구 등 165개 제품군	폐지,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목재, 폐금속 등 13개 분야
인증 제품수	3,745개 업체 14,326개 제품 ('18.9월말 기준)	197개 업체 225개 제품 ('18.9월말 기준)
인증 기준	환경마크 홈페이지 참조	GR제품정보시스템 참조
인증기관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통상자원부 /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
홈페이지	greenproduct.go.kr	buygr.or.kr

□ 녹색제품의 기준

- 녹색제품 인증기준은 **환경기준과 품질기준**으로 구성
 - 환경기준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과정에서 환경성(유해 물질 저감, 인체 안전, 절전, 절수, 재활용, 저소음 등) 고려
 - 품질기준은 해당 제품별 한국산업규격(KS) 등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녹색제품의 필요성

- 녹색제품은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소비자 입장에서조차 녹색제품 구매는 사회적·환경적 편익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
 - 구매단계에서 일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사용단계에서 전기료·물 사용량·폐기물 발생량 절감 등을 통해 비용 회수 가능
-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이바지
 -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제품의 환경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녹색제품 보급 확산은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 제품 안전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기여

<사무실내(438m², 47명) 녹색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경제적 편익(1년 고려)>

구분	제품군	대수	간접편익(원)	직접편익(원)	편익내용
1	복사기	2	294	3,415	에너지 절약
2	복합기	2	210	2,438	에너지 절약
3	레이저프린터	3	331	3,839	에너지 절약
4	레이저팩시밀리	1	340	3,942	에너지 절약
5	데스크탑 컴퓨터	28	8,955	103,932	에너지 절약
6	컴퓨터용 모니터	27	18,398	213,521	에너지 절약
7	노트북 컴퓨터	23	1,417	16,445	에너지 절약
8	복사용지	22	22,886	-	자원 절약
9	형광램프	109	33,998	78,789	에너지 절약 유해물질 저감
합 계			86,829	426,321	-

- 출처 : 환경부 「녹색제품의 환경경제적 편익분석(4차), 2009」

2. 녹색제품 의무구매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구매 하여야 함
 - 구매하려는 세부품목을 결정한 후 세부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구매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대체가능하지 않음에도 무조건 구매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란 의미

○ 가전제품은 제품의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능 차이가 아닌 경우 동일한 품목으로 봄

예) 컴퓨터는 CPU, 하드디스크의 사양차이를 품목이 상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Core2 Duo 2.4GHz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Core2 Duo 2.2GHz가 있을 경우, 양 제품은 일반적인 사무용으로 큰 성능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서버운영 등 특수제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녹색제품 구매

예) 공기청정기 100평형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은 18평형만 있다면 이 경우는 규격이 상이한 것으로 간주

□ 의무구매 범위

- 공공기관에서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3) 건설 공사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 지침에 의한 구매절차에 따라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함
- 특히, 다음의 경우에도 녹색제품 구매 및 실적집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인쇄 : 인쇄업체에서 구매하는 인쇄용지
 - 청소 및 건물 유지보수 : 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세제, 비누, 형광등, 수도꼭지, 양변기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토너 카트리지, 프린터 등
 - 사무기기 렌탈·리스 : 복합기, 컴퓨터 등을 렌탈·리스 하는 경우
 -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시공회사가 직접 구입하는 아스콘, 창호 등 녹색건설자재
 - 그 밖의 구매가 가능한 용역 : 용역업체에서 구입하는 녹색제품

□ 의무구매 예외사항

-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 대상 제품군에는 해당되나, 구매하고자 하는 녹색제품의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 없는 경우
 - 건설자재 : 건축물 및 구조물의 특성상 동일 공종에 다수 규격의 제품이 필요하나, 인증품목 중 필요한 규격의 일부만 녹색제품이 있어 시공, 품질관리상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공사감독, 책임감리)되는 경우. 또는 필수적인 성능, 품질이 요구되어 설계도상에 특정 자재의 성능기준 등 세부규격을 명시한 경우
 - 수처리제 : 지역별 환경시설관리공단 등에서 하수처리를 위해 특수 성분 및 성능의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나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 종량제봉투는 지자체 관내 기업 구매를 이유로 예외 요구 시 인정 불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6.11.10. 개정) 녹색제품 우선사용 명시).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7항에 따라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를 조례로 정하여 제작·유통·판매 대행할 수 있음(녹색제품으로 유도)
- ※ 발주처의 일반제품 시공요구 시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 가능한 경우, 업무협의를 통해 녹색제품으로 대체 구매해야 함
- ※ 단순 규격·성능 또는 디자인이 다르다는 사유로 일반제품 구매 불가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산간·도서 등 지리적 여건으로 녹색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아스콘의 경우 ‘순환아스콘’으로 구매하겠다는 조달청 입찰공고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공급 불가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아스콘 조합 또는 업체로부터 받은 납품불가 문서는 불인정)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경우
 - 녹색제품은 대부분 KS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이나,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KS 규격 이상의 품질을 요구하는 특별한 경우
 -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의 발생으로 녹색제품을 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 ※ 이 경우에도 녹색제품을 전면 배제하기보다는 녹색제품과 일반제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구매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에 최대한 노력
-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특정사유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녹색제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수해복구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등

※ 녹색제품 구매실적 추가·예외 요청 구비 서류

▶ 조달구매실적 예외 요청의 경우

○ 총 구매금액 예외요청 제출서류

- ① 구매실적 수정요청 사유서, ②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또는 조달청 녹색제품 구매실적 보고서)

* 조달청 나라장터 - 통계분석정보 - 주요통계 - 물품 - 내자물품 - 녹색(친환경)제품 구매실적

○ 녹색제품 구매금액 수정요청 제출서류

- ① 구매실적 수정요청 사유서, ② 분할납품 요구 및 통지서(또는 조달청 녹색제품 구매실적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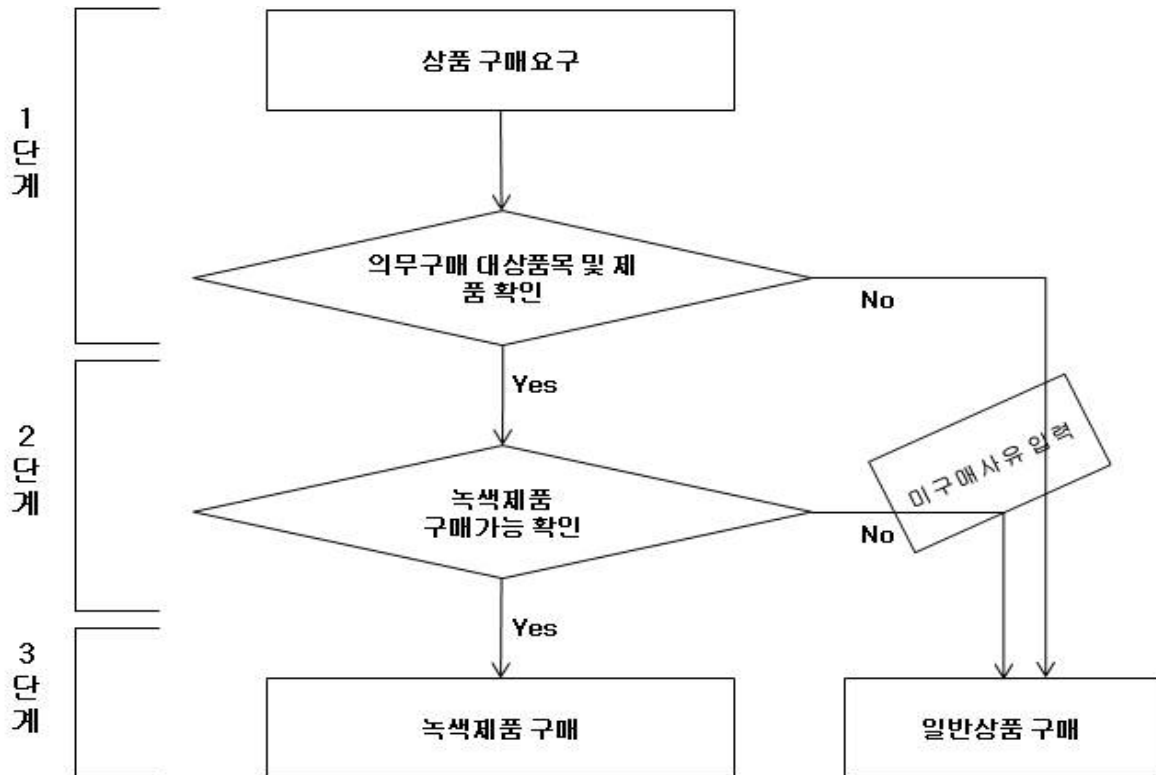
▶ 조달구매 외 자체구매실적 추가 요청의 경우

○ 자체구매실적 추가요청 제출서류

- ① 구매실적 추가요청 사유서, ② 계약서(구매요청서), ③ 세금계산서, ④ 인증서(환경표지, GR)

3. 녹색제품 구매절차

□ 직접적인 물품 구매의 경우



○ 1단계 :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제품 확인

- 구매 요구가 있을 시에는 구매하려는 물품 품목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인지 여부 확인
- 녹색제품 대상품목이라면 실제 인증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녹색제품 구매시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또는 GR제품정보시스템(www.buygr.or.kr)를 통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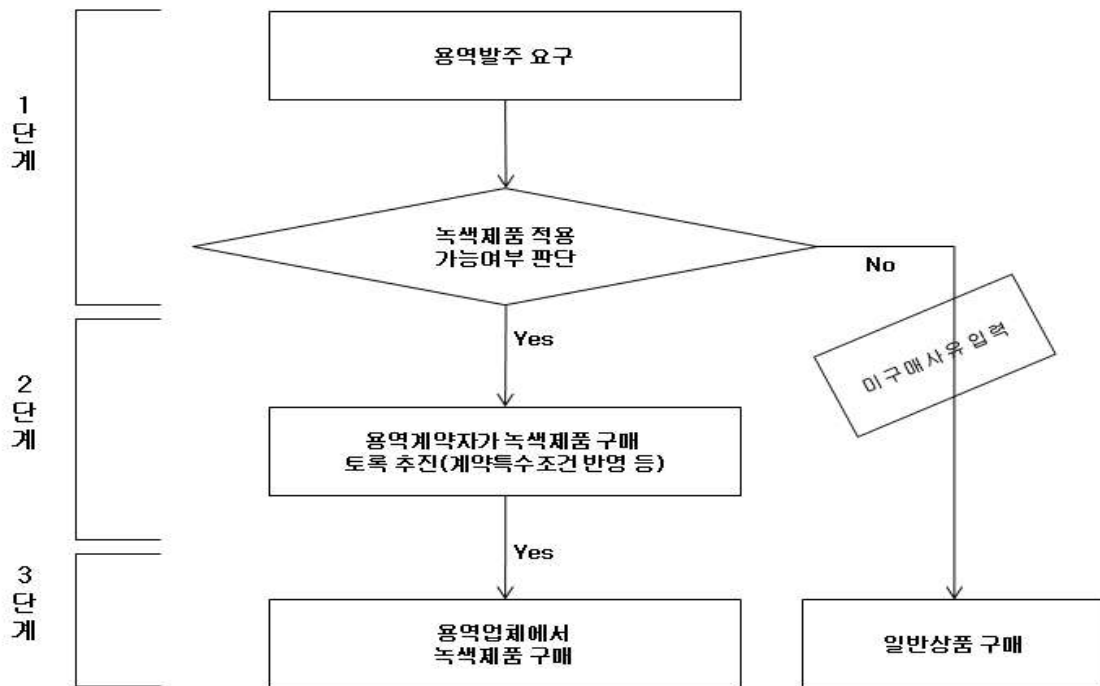
○ 2단계 :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를 최종 확인

○ 3단계 : 녹색제품 구매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녹색장터(<http://shop.greenproduct.go.kr/>) 또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에 등재되어 있는 판매처 등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 용역계약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 1단계 : 녹색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 발주하려는 용역 계약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인증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용역계약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2단계 : 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 구매토록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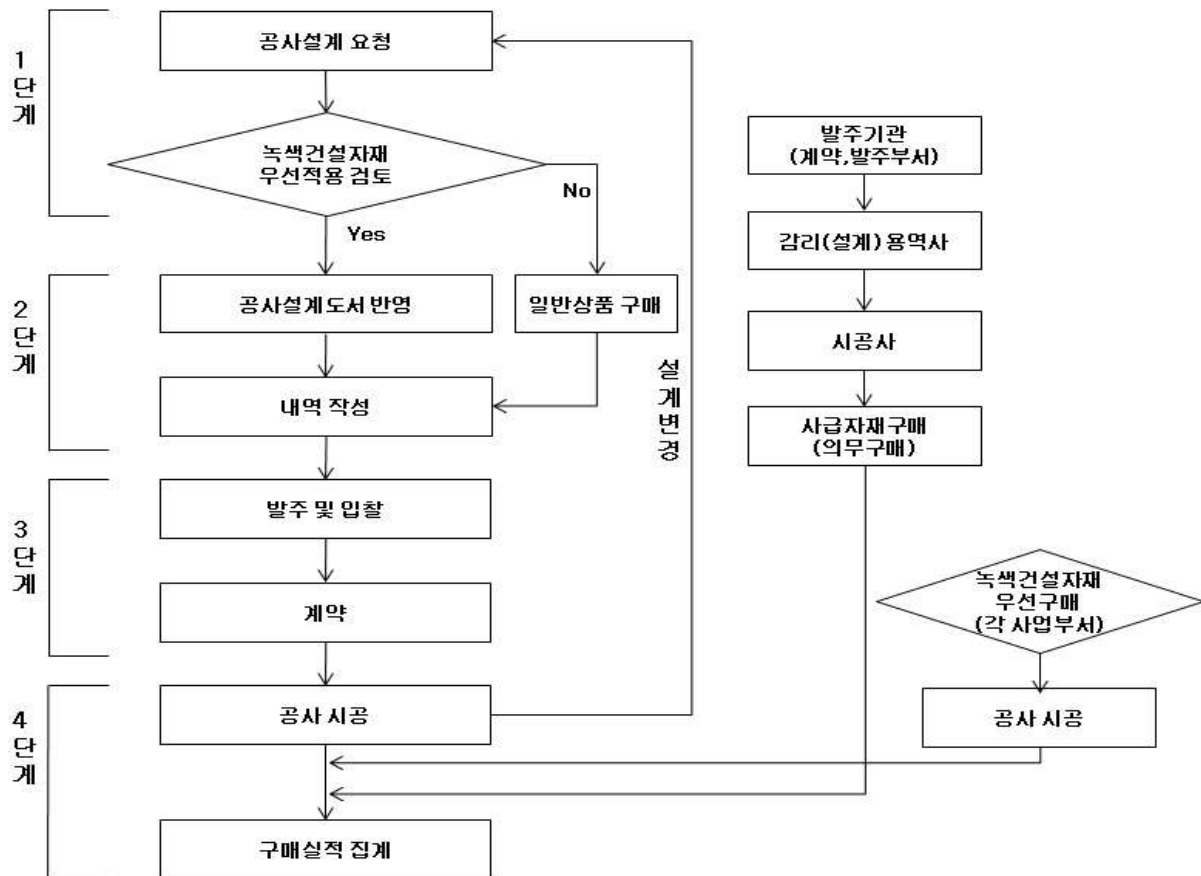
-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치
- ⇒ 용역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녹색제품 사용 및 정산·보고 명시

○ 3단계 : 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 구매

- 용역계약자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후,
- 각종 녹색제품(판매처 정보 등) 정보를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 공공기관(발주처)은 용역계약자에게 계약 수행완료 후 정산 시 녹색제품 구매 내역(목록 및 증빙서류)을 작성하여 제출 요구
-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활용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
- 용역계약 시 녹색제품 구매를 기준으로 원가 산정하여 진행

□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녹색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하는 경우



○ 1단계 : 녹색 건설자재 우선 적용 검토

- 공사의 성격, 시공성, 안정성과 녹색 건설자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설계용역 요청단계에서 과업지시서 등에 녹색 건설자재 적용 명시
- 녹색 건설자재는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http://gmc.greenproduct.go.kr>)을 참고하여 공사 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 적용

○ 2단계 : 공사 설계도서 반영

- 공공기관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녹색 건설자재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반영여부 확인 및 근거 마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순환아스콘)을 40%이상 의무 사용(붙임1 46~50p 참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GR인증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성능인증제품, 단체표준인증제품 등 4가지 인증이 해당되나, GR인증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만 녹색제품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함

-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는 녹색 건설자재 사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사에정가격이 종합공사 4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 공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을 직접구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 - 13호)

○ 3단계 : 공사입찰 및 계약

-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공사계약 단계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도 녹색 건설자재 우선 사용 명시
-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 BTL 등의 공사발주 시 녹색 건설자재 우선 적용을 위한 가점 제공
- 공사수주 업체는 녹색 건설자재 구매·사용 예정 목록을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 4단계 : 공사시공

- 관급(지급)자재 조달구매 의뢰 시 녹색 건설자재 우선 구매 요청
-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사급자재 공급원 승인 시 (하도급 공사 포함) 녹색건설자재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감리 및 관리 감독
-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시공사의 공사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 요청 시 녹색건설자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 및 관리 감독
- 공사감독(건설사업관리자 또는 책임감리)은 공사에 사용된 녹색건설자재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주기적(분기)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보고서 작성·제출 서식 별지 제47호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에 환경표지, GR인증 투입현황 보고 의무 (’15.6.30 시행) (붙임1 51p 참조)
-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는 녹색제품 구매 예정목록에 따라 녹색 건설자재가 구매·사용되고 있는지 수시점검

○ 5단계 :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구매실적에 대한 집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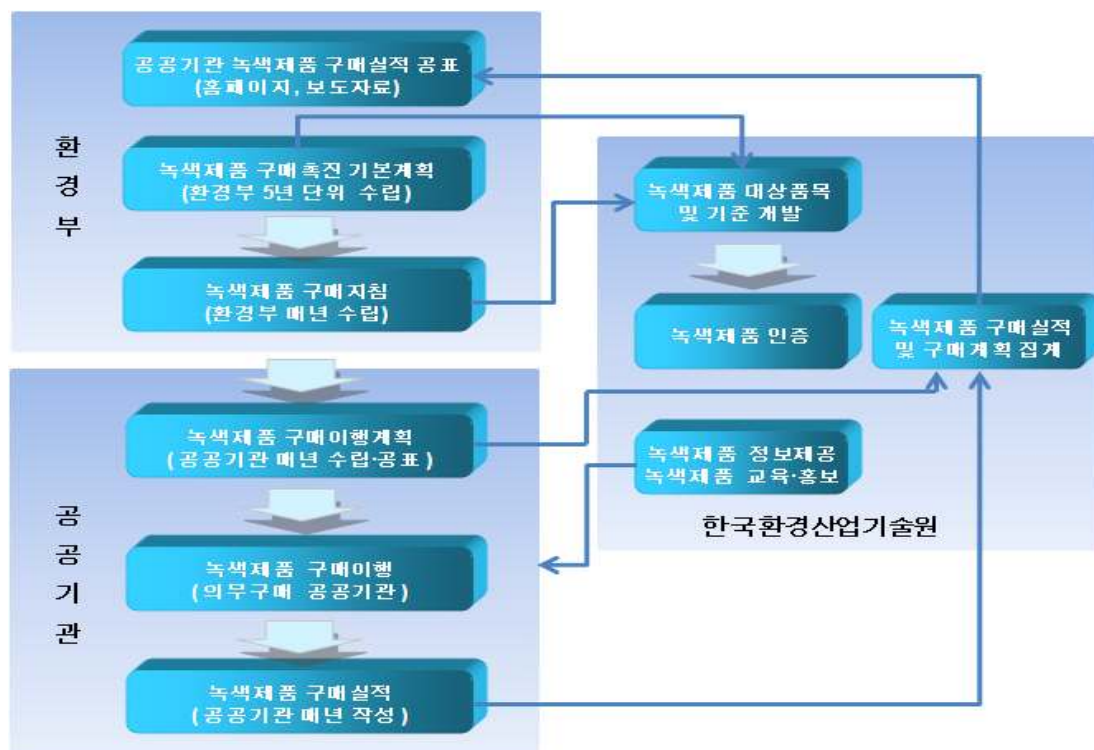
- 공공기관(발주처)는 시공사에게 시공완료 후 정산 시 녹색건설자재 구매 내역(목록 및 증빙서류)을 작성하여 제출 요구
- 계약담당자는 녹색 건설자재 구매실적을 녹색제품 구매집계부서에 제출

4.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제출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이행 체계

- 5년 단위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
 -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통보
- 녹색제품 구매지침 수립
 - 환경부장관은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
-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
 -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제출
 -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말까지**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구매 추진체계 >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 각 공공기관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매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시행
- 매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자체 점검 및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
 -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품목별 구매계획금액 및 목표 구매율
 - 당해연도 구매계획이 직전년도 평균 구매계획보다 낮은 경우 사유 명시
 - 전년도 품목별 구매율보다 10% 이상 낮은 경우 사유 명시

□ 녹색제품 구매실적

- 녹색제품 구매실적 작성 시 포함할 사항
 -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 지자체(지방, 교육)의 경우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이호조, 에듀과인)의 녹색제품 자체구매 실적 포함
 - 공공공사에 녹색건설자재 사용 시 구매실적 집계
 - 특히 공공청사 등이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받았을 경우, 해당 공사에서 구매된 녹색 건설자재 구매실적 반영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이 낮은 경우 그 사유 명시
 - 전년도 대비 50%이상 증가하거나 30%이상 감소하는 경우 사유 명시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 수단 평가 등

* 녹색제품 구매실적 작성은 <붙임 5>의 예시를 참조

조달청 이외 신뢰할 수 있는 녹색제품 실적 인정

- 녹색장터(<http://shop.greenproduct.go.kr>)에서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 MRO기업에서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 BTL사업 등을 통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실적
- 권역별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제출 절차

-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시스템 구축에 따라 소속·직속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실적집계 및 제출이 가능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예시 >

□ 중앙행정기관(환경부)를 예로 들면,

- 소속기관(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분쟁위 등) : 각각 자체적으로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
- 본부(환경부 본부) : 본부 자체(소속기관 자료와 별도)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한 다음, 소속기관과 본부 자체의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합산하여 시스템에 제출
 - *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이 공공기관 지정현황(기획재정부) 상 기타기관 등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본부 실적에 합산하지 않고 제출함에 유의
(ex. 국방기술품질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기관인 방위사업청 실적에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 실적 집계 및 제출)

□ 지방자치단체(서울 강동구청)를 예로 들면,

- 구청 직속기관(강동보건소 등) 및 동사무소 : 각각 자체적으로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
- 구청(강동구청 본청) : 구청 자체(소속기관 자료와 별도)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한 다음, 직속기관·동사무소와 구청 자체의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합산하여 시스템에 제출·공표
 - * 구청의 구매실적은 서울특별시청에서 관리할 수 있으나, 강동구청의 구매실적은 서울시청의 실적에 합산되지 않음에 유의. 즉, 서울시청은 강동구청 등 각 구청의 실적은 합산하지 않고 환경부에 제출함에 유의

□ 교육자치단체(서울 강동교육지원청)를 예로 들면,

- 강동교육지원청 직속기관(도서관 등) 및 소속학교 : 각각 자체적으로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
- 강동교육지원청 : 강동교육지원청 자체(소속기관 자료와 별도) 구매실적과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한 다음, 소속기관과 강동교육지원청 자체의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시스템 합산기능을 이용하여 합산한 다음 시스템에 제출·공표
 - * 서울시교육청은 강동교육지원청 등 각 소속 지역교육청의 구매실적은 합산하지 않고 환경부에 제출함에 유의

□ 그 외 기관(한국환경공단)를 예로 들면,

- 각 지사 : 각각 자체적으로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 가능
- 본사 : 본사 자체(각 지사 자료와 별도)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집계·수립한 후 시스템에 제출한 다음, 각 지사와 본사의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을 시스템 합산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에 제출·공표

5. 그 밖의 사항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다수의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구매 원칙

-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제품 모두 환경보전과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법상 동등한 의무구매 대상임
-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상제품의 품질, 가격 등을 비교하여 녹색제품 중 구매목적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구매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 탄소발자국·저탄소 인증제품, 에너지 절약제품,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

구 분	탄소발자국 인증제품	저탄소제품 인증제품
대상품목	내구·비내구재 일반제품, 생산재, 서비스 등 5개 제품군	탄소배출량 인증제품 중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제품
인증 제품수	295개 기업 2,079개 제품 (’18.9월 기준)	50개 기업 489개 제품 (’18.9월 기준)
형태		
인증기관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www.edp.or.kr	

□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활용

- 환경부에 제출된 각 기관별 구매실적은 녹색제품 보급촉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의 업무평가 자료로 활용(법 제10조)

< 기관업무평가 반영 현황 >

구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평가주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평가시기	'19.2월(예정)	'19.2월(예정)	'19.4월(예정)

- 환경부에서 녹색제품 구매업무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 평가 또는 감사 시 **이행상황** 수시 점검 실시 예정
- 구매실적 및 구매이행계획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통보와 함께 언론공표
- 각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결과를 대국민 공개

[참고 1] 지방자치단체 2019년도 합동평가(안)

국정 목표	2.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국정 전략	2-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국정 과제	2-2-4. 사회적경제 활성화																																					
평가 지표	㉔ 녹색제품 구매비율																																					
측정 방법	○ 산식 ㉔ 녹색제품 구매비율 : (녹색제품 구매금액 / 대상품목 총 구매금액) x 100(%) - 목표치(%) <table><tr><td>서울</td><td>부산</td><td>대구</td><td>인천</td><td>광주</td><td>대전</td><td>울산</td><td>세종</td><td>경기</td><td>강원</td><td>충북</td><td>충남</td><td>전북</td><td>전남</td><td>경북</td><td>경남</td><td>제주</td></tr><tr><td>47.8</td><td>59.5</td><td>46.2</td><td>53.5</td><td>43.1</td><td>48.7</td><td>50.4</td><td>41.5</td><td>54.0</td><td>37.3</td><td>39.5</td><td>43.9</td><td>36.3</td><td>39.4</td><td>38.2</td><td>43.6</td><td>42.7</td></tr></table> ※ 2020년까지 60% 목표에 따라 '17년 실적을 기반으로 연도별 균등 분할 적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7.8	59.5	46.2	53.5	43.1	48.7	50.4	41.5	54.0	37.3	39.5	43.9	36.3	39.4	38.2	43.6	42.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7.8	59.5	46.2	53.5	43.1	48.7	50.4	41.5	54.0	37.3	39.5	43.9	36.3	39.4	38.2	43.6	42.7																					
	○ 산식설명 ㉔ 녹색제품 구매비율 - 녹색제품 구매금액 : 평가년도 녹색제품 전체 구매금액 * 녹색제품이란 환경마크·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 제품 - 총 구매금액 : 평가년도 녹색제품과 일반제품 모두 포함한 전체 구매금액 ※ 모든 자료는 조달청, 친환경e-마켓, 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한 구매금액 기준 ※ 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기준																																					
	○ 평가대상 광역시·도(시·군·구 포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실적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 12. 31																																						
시스템 구현 서식	㉔ 녹색제품 구매비율 (단위 : 천원, %)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녹색제품 구매비율</th><th rowspan="2">녹색제품 구매비율 목표(D)</th><th rowspan="2">목표대비 달성율(% C/D×100)</th></tr><tr><th>녹색제품 구매금액(A)</th><th>총 구매금액(B)</th><th>C=A/B×100</th></tr><tr><td>합계(㉔+㉕)</td><td></td><td></td><td></td><td rowspan="6"></td><td rowspan="6"></td></tr><tr><td>○○시도 ㉔</td><td></td><td></td><td></td></tr><tr><td>시군구 합계 ㉕</td><td></td><td></td><td></td></tr><tr><td>○○ 시</td><td></td><td></td><td></td></tr><tr><td>○○ 군</td><td></td><td></td><td></td></tr><tr><td>○○ 구</td><td></td><td></td><td></td></tr></table>			구 분	녹색제품 구매비율			녹색제품 구매비율 목표(D)	목표대비 달성율(% C/D×100)	녹색제품 구매금액(A)	총 구매금액(B)	C=A/B×100	합계(㉔+㉕)						○○시도 ㉔				시군구 합계 ㉕				○○ 시				○○ 군				○○ 구			
	구 분	녹색제품 구매비율			녹색제품 구매비율 목표(D)	목표대비 달성율(% C/D×100)																																
		녹색제품 구매금액(A)	총 구매금액(B)	C=A/B×100																																		
	합계(㉔+㉕)																																					
	○○시도 ㉔																																					
	시군구 합계 ㉕																																					
	○○ 시																																					
	○○ 군																																					
○○ 구																																						
연계 시스템			㉔ 녹색구매정보시스템(환경부)																																			
분석 자료			㉔ 시도, 시군구별 녹색제품 구매금액 및 비율																																			
증빙 자료			증빙자료 불필요 - 녹색제품 구매비율 : 환경부 녹색구매정보시스템 자료 연계																																			
문의처			㉔ 환경부 김무연(☎ : 044-201-6711, E-mail : wiebitte@korea.kr) 녹색구매정보시스템 담당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실 윤수현 (☎ : 02-2284-1913, E-mail : sooh@keiti.re.kr)																																			

[참고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19년도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안)

① 평가지표 체계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배점)	배점	비고
산출 및 결과(100)	1. 이행도	1. 녹색제품 구매비율	70	정량
	2. 향상도	2. 녹색제품 구매비율 증감분	30	정량

②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지표	1. 녹색제품 구매비율(70점)
측정산식	○ 대상품목 전체 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액 비율(70) $X = (\text{녹색제품 구매액} / \text{대상품목 전체 구매액}) \times 100(\%)$ * 총 구매액 제외요청 후의 구매비율로 산정 <평정점(P) 산출공식> $P = \begin{cases} \frac{7}{8} X & (X < 80\%) \\ 70 & (X \geq 80\%) \end{cases}$ (예시) X=76%일 경우 P=66.5점 1. 구매액 비율(X)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P=(7/8)X' 공식에 따른 점수 부여 2. 구매액 비율(X)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최고값 70점 부여
평가근거/ 자료	○ 환경부 제출 실적 보고서

평가지표	2. 녹색제품 구매비율 증감분(30점)
측정산식	○ 전년대비 당해연도 녹색구매실적 비율 증감분(30) $Y = \text{당해연도 녹색구매비율}(\%) - \text{전년도 녹색구매비율}(\%)$ * 총 구매액 제외요청 후의 구매비율로 산정 <평정점(P) 산출공식> - $Y \leq 0\%$, $P = 0$ - $0\% < Y < 10\%$, $P = 3Y$ - $Y \geq 10\%$, $P = 30$ ※ 총 구매액 제외요청 후 녹색구매비율(X) $\geq 80\%$, $P = 30$ (예시) $Y=7\%$일 경우 $P=21$점
	1. 구매비율 증감분(Y)이 0% 미만인 경우에는 $P=0$, 10% 이상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최고값 30점 부여 2. 구매비율 증감분(Y)이 0%이상, 10% 미만인 경우 $P=3Y$ 공식에 따른 점수 부여 3. 총구매액 제외 예외인정 후 녹색구매비율(X')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Y값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고값 30점 부여
평가근거/자료	○ 환경부 제출 실적 보고서

[참고 3] 지방공사·공단 2019년도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안)

지 표 명	친환경 경영										
대 분 류	사회적 가치			중 분 류	사회적 책임						
가 중 치	2점	지표성격	정성, 정량	평가방법	절대 1.5, 목표대실적 0.5						
지표정의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장을 위해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을 축소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세 부 평가내용 (측정산식)	① 친환경 도시철도 운영 -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자원절약 노력 및 성과 - 지하역사 내 공기질, 폐수·폐기물 등 환경오염 적정관리 - 친환경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 및 성과 ② 친환경·녹색제품 활용 및 구매 등의 노력 ③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0.5점, 정량)										
평가내용 정 의	○ 친환경이란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감(에너지 효율증대), 친환경 소재 및 원료 사용, 녹색경영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의미한다. ○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일산화이질소(아산화질소), 프레온(CFC) 등을 의미한다. ○ 에너지절감에서 에너지란 전력, 가스, 석유 등의 에너지를 의미하며, 절감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것뿐만 아니라 효율을 증대한 실적도 절감으로 인정한다. ○ 녹색제품이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친환경적인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의미한다(조달청 공공조달 녹색제품 기준 참조). ○ 친환경 연구개발이란 도시철도 시설물과 관련된 부품의 대체품 및 수명 연장, 에너지 절감 등의 기술혁신을 말한다.										
세 부 평가방법	○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대상기관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table border="1"><thead><tr><th>지 표</th><th>득점 산식</th><th>비 고</th></tr></thead><tbody><tr><td>녹색제품</td><td>$(X+2Y) \times 0.5$점</td><td>X = 구매대상 품목의 총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비율(%), 80%이상인 경우 최고값 0.8 부여 Y = 전년도 대비 녹색제품 구매비율 증가율(%) * 산출공식 : (당해년도 녹색구매비율 - 전년도 녹색구매비율) / 전년도 녹색구매비율 단, 구매비율이 80%이상이거나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 최고값 0.1 부여(신규평가대상기관 : 최고값 0.1 부여)</td></tr></tbody></table> - 달성여부는 주무부처(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의 실적자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당해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측정한다. ○ 해당이 없는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정성지표는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 표	득점 산식	비 고	녹색제품	$(X+2Y) \times 0.5$ 점	X = 구매대상 품목의 총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비율(%), 80%이상인 경우 최고값 0.8 부여 Y = 전년도 대비 녹색제품 구매비율 증가율(%) * 산출공식 : (당해년도 녹색구매비율 - 전년도 녹색구매비율) / 전년도 녹색구매비율 단, 구매비율이 80%이상이거나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 최고값 0.1 부여(신규평가대상기관 : 최고값 0.1 부여)
지 표	득점 산식	비 고									
녹색제품	$(X+2Y) \times 0.5$ 점	X = 구매대상 품목의 총구매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비율(%), 80%이상인 경우 최고값 0.8 부여 Y = 전년도 대비 녹색제품 구매비율 증가율(%) * 산출공식 : (당해년도 녹색구매비율 - 전년도 녹색구매비율) / 전년도 녹색구매비율 단, 구매비율이 80%이상이거나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 최고값 0.1 부여(신규평가대상기관 : 최고값 0.1 부여)									



Ⅲ. 행정사항

▮ 2019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

III. 행정사항

- 본 지침에 따른 공공기관에서는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적극 협조**
 - 용역 및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본 지침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계약서, 시방서 등에 반영**
 - 특히, 과업수행 완료 후 용역업체는 **녹색제품 구매 목록과 증빙자료를 발주처(공공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필요
 -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 각 기관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매담당자 및 회계·건설관련 부서담당자를 대상으로 **녹색제품 구매교육 실시**
 - 환경부에서도 녹색제품 구매순회교육('19.11~12월, 11개 권역 실시 예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 바람
 - 자체 녹색제품 구매지침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에 협조
 - 소속·산하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관련 사항 지도·감독**
 - 각 공공기관은 산하기관에 대하여 감사 시 또는 자체계획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을 수시점검
 -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내부부서평가 등에 구매실적 반영 및 우수구매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지방·교육자치단체는 필요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 환경부에서는 지방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독려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 표준조례(안)”을 마련, '06년 4월 시달('11.11월 개정 시달)한 바 있음
 - 또한, 교육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독려하기 위해 “교육지자체 녹색제품 구매 표준 조례 제정 간담회” 실시('13.4.19), '13년 7월 표준조례(안) 시달한 바 있음
 - 조달청의 경우, 공공기관의 구매요청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 구매가 가능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으로 구매되도록 요청
- * 관련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 공공기관에서는 '19년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 및 '18년도 구매실적을 취합·제출('19.3월말까지)하여야 하고, 두 자료를 3월말까지 **녹색구매정보시스템(gd.greenproduct.go.kr)**을 통해 제출

*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은 '18.1월말까지 실적 제출

○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녹색구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적 및 이행계획 등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제출 시에는 공문, 실적 등의 자료, 공표 증빙자료 등도 녹색구매정보시스템을 통해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실적입력은 직접입력 뿐 아니라 소속기관 등에 배포한 엑셀파일 업로드도 가능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우 0336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생활팀

- 전화번호 : 1544-2660

- E-mail : green@keiti.re.kr

□ 그 밖의 협조사항

○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녹색구매 활성화 워크숍에 구매·건설 부서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 요망

○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에 공지하고 내부 인트라넷 등에 **정보망 배너 링크** 요망

○ 녹색제품 대상품목에 대한 의견 제시

- 각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녹색제품 품목(현재 녹색제품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녹색제품 품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연락 바람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40호, 2013.12.30., 일부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71호, 2015.3.30., 일부개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490호, 2012.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4.1, 2010.1.13, 2011.4.5> 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5.3.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전문개정 2012.7.31]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2013.3.23>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		

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 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 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 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 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본조신설 2011.4.5]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 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계획의 수립·시행, 자료조 사,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 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③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 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제목개정 2011.4.5]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 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 정 2010.2.4, 2011.4.5, 2011.7.2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 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 는 공공기관의 장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4. 녹색제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1.4.5]	계획(이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5조 삭제 <2010.2.4>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 및	

[제목개정 2011.4.5]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본조신설 2014.3.18]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본조신설 2014.3.18]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제목개정 2011.4.5]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7.31]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제목개정 2011.4.5]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본조신설 2014.3.18]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7.31]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본조신설 2014.3.18]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7.31]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 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	
---	---	--

	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의 접수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제품 정보 제공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4. 삭제 <2015.3.30> 5. 삭제 <2015.3.30>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7. 제12조에 따른 정보 관리 및 정보자료집 제공 [전문개정 2012.7.31]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1.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1.4.5]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	

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4.5]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①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5, 2013.12.30> ②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녹색제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13조 삭제 <2009.1.7>		
제14조(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①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4.5] 제14조의2(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정부는 녹색제품의 품질·안정성·환경친화성 및 생산·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이행계획과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녹색제품의 품질·안전성·환경친화성 및 구매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31]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의 접수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제품 정보 제공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4. 삭제 <2015.3.30> 5. 삭제 <2015.3.30>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7. 제12조에 따른 정보 관리 및 정보자료집 제공 [전문개정 2012.7.31]	
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①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2010.2.4, 2011.4.5>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녹색제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4. 국내·외 녹색제품 관련 인증 획득 지원 5. 녹색제품의 생산·유통·판매 자금 지원 6.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을 촉진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종합대상 2. 녹색제품 우수부문상(생산·유통·구매 등) ②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7.31]	

하기 위한 기업 간 기술이전 지원 7. 녹색제품의 품질향상 지원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지원 9. 녹색제품의 홍보·교육 지원 10.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정부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11.4.5> [제목개정 2011.4.5]		
제15조의2(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녹색제품의 기술개발·생산·판매실태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등 조사사업 2. 녹색제품의 홍보 및 소비자 교육을 위한 사업 3. 새로운 녹색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위한 공제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에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본조신설 2010.2.4] [제목개정 2011.4.5]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색제품 생산업체·유통업체·구매업체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5]		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의4(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제조·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 2. 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 3. 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본조신설 2011.4.5]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1.4.5>		
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5> [제목개정 2010.2.4]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의 접수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제품 정보 제공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4. 삭제 <2015.3.30> 5. 삭제 <2015.3.30>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7. 제12조에 따른 정보 관리 및 정보자료집 제공 [전문개정 2012.7.31]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5> [본조신설 2010.2.4]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3. 전문 교수요원의 보유현황 또는 확보계획 4. 운영경비 조달계획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	

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정보제공 사업 2.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3.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4.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본조신설 2011.4.5]	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2.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녹색제품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연 1회 평가. 다만,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받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면제한다. 2. 종합평가: 지원센터의 운영실태를 3년에 1회 평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31]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	---	--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7.31]	
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①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점포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를 녹색매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④ 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4.5]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3.30>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1. 환경목표를 수립하는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2. 녹색제품의 판매 확대 및 홍보 등 녹색제품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오염저감 및 에너지관리 조치를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 4. 환경경영에 대한 고객과의 인식 공유, 고객 참여 촉진 등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 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2.27> [전문개정 2012.8.2]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신청인의 매장이 제5조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매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3.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본조신설 2012.7.31]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의 접수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제품 정보 제공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4. 삭제 <2015.3.30> 5. 삭제 <2015.3.30>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7. 제12조에 따른 정보 관리 및 정보자료집 제공 [전문개정 2012.7.31]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2(보고·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18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녹색매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5]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09.1.7, 2011.4.28, 2013.7.16> [제18조에서 이동 <2006.9.27>]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구매실적의 접수 2.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녹색제품 정보 제공 3.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교육 4. 삭제 <2015.3.30> 5. 삭제 <2015.3.30>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7. 제12조에 따른 정보 관리 및 정보자료집 제공 [전문개정 2012.7.31]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를 위반하여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7.31]	
제21조 삭제 <2012.2.1>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폐기물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781호, 2017.4.18., 일부개정]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1.16., 타법개정]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콘크리트 제품(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 주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GR인증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 성능인증제품, 단체표준인증제품 등 4가지 인증이 해당되나, GR인증제품, 환경표지인증제품만 녹색제품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함

**(환경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시행 2017.9.27.] [환경부고시 제2017-175호, 2017.9.27., 일부개정]

1)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농어촌도로” 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아.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매립시설 복토용 (일일·중간·최종복토)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2)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제품 소요량의 40%이상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다. 「하수도법」에 따른 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공사(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아.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제품 및 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용량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가.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 40킬로미터 이내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경우
-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이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
- 다.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 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5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85호, 2018년 7월 1일)

[별지 제47호 서식]

(제 1 쪽)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1 자재공급원 승인현황

품 명	규 격	공급원	승인일	비고

(제 2 쪽)

2 주요자재 투입현황

2.1 관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2 사급자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2.3 녹색 건설자재(환경표지·GR마크) 투입현황

품 명	규 격	단 위	설계량	반입량	사용량	잔 량

3 주요자재관리 종합분석

○

붙임 2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현황('18.10 기준)

구 분	기관수	대 상 기 관
합계	918	
국가기관	51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국회사무처,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법원,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대상에서 제외
지방자치단체	438	<지방자치단체> 24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달성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청북도, 제천시,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금산군,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라남도,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구 분	기관수	대상 기관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상남도,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교육자치단체> 193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부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강동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 동작교육지원청, 성동교육지원청, 성북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달성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강화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강남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강원도교육청, 원주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삼척교육지원청, 춘천교육지원청, 동해교육지원청, 태백교육지원청, 홍천교육지원청, 횡성교육지원청, 영월교육지원청, 평창교육지원청, 정선교육지원청, 철원교육지원청, 화천교육지원청, 양구교육지원청, 인제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 공주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보령교육지원청, 서산교육지원청, 금산교육지원청,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부여교육지원청, 서천교육지원청, 청양교육지원청, 홍성교육지원청, 예산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익산교육지원청, 정읍교육지원청, 남원교육지원청, 김제교육지원청, 전주교육지원청, 군산교육지원청, 완주교육지원청, 진안교육지원청, 무주교육지원청, 장수교육지원청, 임실교육지원청, 순창교육지원청, 고창교육지원청, 부안교육지원청, 전라남도교육청, 순천교육지원청, 나주교육지원청, 여수교육지원청, 광양교육지원청, 목포교육지원청, 담양교육지원청, 곡성교육지원청, 구례교육지원청, 고흥교육지원청, 보성교육지원청, 화순교육지원청, 장흥교육지원청, 강진교육지원청, 해남교육지원청, 영암교육지원청, 무안교육지원청, 함평교육지원청, 영광교육지원청, 장성교육지원청, 완도교육지원청, 진도교육지원청, 신안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 안동교육지원청, 경주교육지원청, 김천교육지원청, 구미교육지원청, 영주교육지원청, 영천교육지원청,

구 분	기관수	대 상 기 관
		상주교육지원청, 문경교육지원청, 경산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 군위교육지원청, 의성교육지원청, 청송교육지원청, 영양교육지원청, 영덕교육지원청, 청도교육지원청, 고령교육지원청, 성주교육지원청, 칠곡교육지원청, 예천교육지원청, 봉화교육지원청, 울진교육지원청, 울릉교육지원청, 경상남도교육청 , 진주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밀양교육지원청, 거제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창녕교육지원청, 양산교육지원청, 고성교육지원청, 남해교육지원청, 하동교육지원청, 산청교육지원청, 함양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합천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장형 공기업	14	(산업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강원랜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21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화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산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2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문화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구 분	기관수	대상 기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가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행안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훈처)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식약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지방 공기업 · 의 료원	76	<지방공기업> 47개 (서울)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부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대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인천)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광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구 분	기관수	대상 기관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대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경기)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강원) 강원도개발공사 (충북) 충북개발공사 (충남) 충청남도개발공사 (전북) 전북개발공사 (전남) 전남개발공사 (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경남) 경상남도개발공사, 창원경륜공단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광역직영, 기초직영·공사·공단은 상위기관(광역시·도 및 기초 지자체)에 포함 <의료원> 29개 서울의료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인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순천의료 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 원, 울진의료원, 마산의료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지자체 출연연구원 · 재단	15	서울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 원, 울산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충남발전 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광주 전남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기타 공공기관	208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구 분	기관수	대 상 기 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울산과학기술원, 재단법인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문화부)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예술의전당, (재)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식품부) (재)한식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업부)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의료재단법인한일병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재)한국에너지재단,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 분	기관수	대상 기관
		(재)한국장기기증원, 한국인체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사단법인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토부) (주)위터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원, (주)에스알,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주식회사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중기부) (재)중소기업연구원,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주)공영홈쇼핑,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한국산학연합회 (금융위)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서민금융위원회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훈처) 88관광개발(주)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관세청)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림청) 한국수목원관리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동 녹색제품 구매 수범사례는 정부업무평가, 녹색제품 관련 정부포상, 구매이행 실태 조사 등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별 추진사항을 녹색제품 담당자가 업무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구성함

□ 구매지침, 계약규정 등 내부규정 반영

- 각종 실무지침 및 규정에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한국국제교육재단)

친환경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1 조(적 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국제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이하 “구매 등 계약”이라 한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친환경상품”이라 한다.)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상품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구매이행 준수의무)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친환경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친환경상품인증)

-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친환경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친환경상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2. 친환경상품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
 3. 친환경상품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 5 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친환경상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7 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를 포함한다.)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물품구매 규격 등에서 정한 친환경상품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되는 친환경상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 사용하여야 하며, 동 제품의 사용(공사·용역·물품)실적은 기성금 청구 및 준공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구매, 공사 등 계약시 특수조건, 계약사무규칙에 녹색제품 구매근거 마련(한국산업안전공단)

「공공구매 지침」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규정	
제7조(인쇄물 구매)	구매요구부서의 장은 간행물, 자료 등을 인쇄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도록 사양서에 명문화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친환경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별지 제1호서식)을 계약조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쇄물 특성,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 이외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공사 및 용역계약에 따른 물품 구매)	①구매요구부서의 장은 공사 및 용역에 사용되는 물품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인증신제품 등 공공구매제품을 사용하도록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친환경상품 구매계약 특수조건”(별지 제1호서식)을 계약조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구매요구부서의 장은 시설 설계용역을 계약요청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KS 품질기준에 적합한 공공구매제품 자재의 우선 구매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설계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구매 대상 사전검토)	①계약담당자는 구매요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구매대상 물품이 다음 각 호의 공공구매제품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물 2. 친환경상품 3. 중소기업제품(여성기업 및 기술개발제품 포함) 4. 국가유공자생산물 5. 사회적기업생산물

- 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시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 7 조(납품이행 등)	⑤본 용역 수행시 인쇄용지 등 물품구매시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 22 조(보칙)	⑥본 공사와 관련하여 물품구매시 ……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계약특수조건	
제 6 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⑤본 용역 수행시 인쇄용지 등 물품구매시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인증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 전에 계약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지방서 등 명시

- 자재구매 규격상 제품규격에 환경마크 인증제품 명시하여 입찰공고(한국동서발전)

PAGE				1 / 2																															
자재 구매 규격서																																			
작성 부서	환경관리팀	품 명 : ALUM(액상)		작성 자	박 이 서																														
품질 등급	S			개정 번호	2																														
규격 번호				제(개)정일자	2012. 07. 31																														
1. 적용범위 : 본 규격은 수·폐수처리 시 부유물질 응집제거공정에 사용하는 약품 ALUM(액상)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 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번 호</th> <th>검 사 항 목</th> <th>단 위</th> <th>규 격</th> <th>시 험 방 법</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성 상</td> <td>-</td> <td>액 상</td> <td></td> <td></td> </tr> <tr> <td>2</td> <td>pH</td> <td>-</td> <td>3.0 이상</td> <td>KSM-1411</td> <td></td> </tr> <tr> <td>3</td> <td>Al₂O₃</td> <td>%</td> <td>8.0 이상</td> <td>"</td> <td></td> </tr> <tr> <td>4</td> <td>철(Fe)</td> <td>%</td> <td>0.02 이하</td> <td>"</td> <td></td> </tr> </tbody> </table>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 3. 시험 및 검사 상기 규격의 시험방법은 KSM-1411에 의하고 납품업체는 최초 납품 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납품 시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 및 운반 Tank Lorry로 저장하여 공급하며 운반 중 내용물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납 기 : 인도지시서에 의함 6. 납품장소 : 수·폐수처리장 약품탱크 7. 입찰요건 : 해당품목 적격업체						번 호	검 사 항 목	단 위	규 격	시 험 방 법	비 고	1	성 상	-	액 상			2	pH	-	3.0 이상	KSM-1411		3	Al ₂ O ₃	%	8.0 이상	"		4	철(Fe)	%	0.02 이하	"	
번 호	검 사 항 목	단 위	규 격	시 험 방 법	비 고																														
1	성 상	-	액 상																																
2	pH	-	3.0 이상	KSM-1411																															
3	Al ₂ O ₃	%	8.0 이상	"																															
4	철(Fe)	%	0.02 이하	"																															
【적용규격 및 자료】				결 재	담 당 화 차 장 홍 팀 장 이																														

- 공사시방서 및 청소용역 시방서에 친환경상품 구매근거 마련 (한국서부발전(주))

《청소용역 시방서》

3. 기타사항

-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전본부 지시에 의거 수행한다.
- 나. 본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작업을 소홀히 하거나 누락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발전본부 지시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및 친환경 상품,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생산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문에 녹색제품으로 한정하여 제한공고 및 구매검토서 작성(한국서부발전)

입찰공고문 및 구매검토서

Focus & Align CWP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수신자 내부결재 (종류) 제 목 2013년도 제8회기 계획예방정비공사 사무용 소모품 구매 1. 2013년도 8회기 계획예방정비공사 사무용 소모품을 아래와 같이 구매하고자 합니다. 가. 구입품목 : 복사용지(A4) 등 9종목 나. 소요예산 : ₩ 2,903,000(VAT 별도) 다. 예산과목 : 8회기 8급 OH 지재(MBS 코드 : 3515108-00004) 라. 납 기 일 : 계약 후 5일 이내 마.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및 녹색제품 우선구매 여부 : 해당없음 바. 청정서약 : 본 건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규정은 철저히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업무를 집행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구매품목 및 세부가격 산출내역서 1부, 2. 청정계약이행서약서 1부, 3.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및 녹색제품 구매검토서 1부, 끝.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및 녹색제품 구매 검토서 <table border="1"> <tr> <td>발주부서</td> <td colspan="3">3발전지 계전팀</td> </tr> <tr> <td>담당자</td> <td colspan="3">김성환(☎3674)</td> </tr> <tr> <td>계약건명</td> <td colspan="3">8회기 계획예방정비공사용 사무용품 구매</td> </tr> <tr> <td>주요내역</td> <td colspan="3">복사용지(A4) 등 9종목</td> </tr> <tr> <td>추정가격</td> <td colspan="3">₩ 2,903,000원 (VAT 별도)</td> </tr> <tr> <td>담당자 검토의견</td> <td colspan="3">중증장애인() / 사회적기업() / 녹색제품() / 해당없음()</td> </tr> <tr> <td>주무차장 또는 기한 검토의견</td> <td colspan="3">원안동의() / 재검토 요함() 확인자 박성호 박성호</td> </tr> <tr> <td rowspan="2">검토결과</td> <td>중증장애인</td> <td>사회적기업</td> <td>녹색제품 / 해당없음</td> </tr> <tr> <td>()</td> <td>()</td> <td>() / ()</td> </tr> <tr> <td colspan="2">추진금액 : ₩2,903,000원 (VAT 제외)</td> <td colspan="2">공인</td> </tr> </table>		발주부서	3발전지 계전팀			담당자	김성환(☎3674)			계약건명	8회기 계획예방정비공사용 사무용품 구매			주요내역	복사용지(A4) 등 9종목			추정가격	₩ 2,903,000원 (VAT 별도)			담당자 검토의견	중증장애인() / 사회적기업() / 녹색제품() / 해당없음()			주무차장 또는 기한 검토의견	원안동의() / 재검토 요함() 확인자 박성호 박성호			검토결과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녹색제품 / 해당없음	()	()	() / ()	추진금액 : ₩2,903,000원 (VAT 제외)		공인	
발주부서	3발전지 계전팀																																									
담당자	김성환(☎3674)																																									
계약건명	8회기 계획예방정비공사용 사무용품 구매																																									
주요내역	복사용지(A4) 등 9종목																																									
추정가격	₩ 2,903,000원 (VAT 별도)																																									
담당자 검토의견	중증장애인() / 사회적기업() / 녹색제품() / 해당없음()																																									
주무차장 또는 기한 검토의견	원안동의() / 재검토 요함() 확인자 박성호 박성호																																									
검토결과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	녹색제품 / 해당없음																																							
	()	()	() / ()																																							
추진금액 : ₩2,903,000원 (VAT 제외)		공인																																								

○ 노후 사무용품 교체에 녹색제품으로 한정하여 제한공고(한국동서발전)

입찰공고문(해당내용 발체)



Global Top 10 Energy Company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KORAIL WEST-VEST POWER CO., LTD.

수신자 내부결재 (참조)
제목 노후 사무용품 전자복사기 교체

우리 본부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내부고객 만족을 위하여 주요 사무실내 노후 사무용품 복사기를 아래와 같이 교체 설치하고자 합니다.

1. 품명 및 수량 : 전자복사기(신도리코 N-605, 캐논 IR-323K), 14대
2. 예산 소요액 : 38,990,420원

구분	신도리코(N-605)	캐논(IR-323K)	비고
구매단가	2,682,900	3,320,000	본제+자율형고이송장치
수량	10대	4대	-
공급가	26,829,000	11,952,000	구매단가 X 수량
조달수수료	144,880	64,540	요율 0.54% 적용
예산소요액	26,973,880	12,016,540	공급가+조달수수료
	38,990,420		

※ 부가세 미포함, '12. 9월 조달한 가격 기준

3. 계약방법 : 조달구매
4. 납품장소 : 건설처 안전품질파트 외 13개소 (별첨 참조)
5. 납기일 : 계약후 15일 이내
6. 특기사항 : 납품시 하자가 있는 경우 반품 또는 교환

붙임 : 노후 비품(전자복사기) 교체 검토 1부, 공.

시행 조현재
직장 신동민
원장 김재오
계장 박남진

참조자 : 경영기획팀 허남훈

일상감사-2012-995(2012.05.12, 목)

시행 당일, 총무팀-992 (2012.03.13.)
우 343-850 송장번호 당리근 석문면 교로리 974번지 / http://www.owp.co.kr
전화 전송 / energy@owp.co.kr / 공계

노후 비품(전자복사기) 교체 검토

1. 건 명 : 본부 주요부서 노후 사무용품 전자복사기 교체

2. 목 적 :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내부고객 만족
나, 사무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3. 연 령 : 가. 본부내 일부 부서의 사무기기 사용 환경 열악
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 복사기 사용 (교체대상 부서: 18개소)
다. 스캔 및 출력 등 다양한 기능 갖춘 사무용 복합기의 판매 증대
라. 복사, 스캔 및 출력까지 가능하여 사무환경 개선
사. 복사기 중심의 기능 탑재로 업무 편의성 증대
다. 집행가능예산액 : ₩40,240,000

4. 검토 : 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본부 사용에 적합한 모델 구매
나. 경제성, 사후관리 등 주요검토사항 비교/분석 후 제품 선정
다. 정부조달제품 등록현황 확인 후 친환경제품 우선구매
라. 대상업체 : 신도리코, 캐논코리아, 후지제록스 등 (별첨1 참조)

5. 주요검토사항 : 가. 경제성 : 기기(본제+원고자동이송장치)구입가격 및 유지관리비 절감 여부
나. 기능성 : 제품기술의 혁신성(사용자 편의기능, 출력속도, 해상도 등)
다. 사후관리 : 토너 및 드럼 등 주요 부품의 신속한 A/S 조치가능 여부
라. 기타사항 :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인증 획득 여부

6. 검토결과 : 가. 구매 예정 전자복사기 모델명 : 신도리코(N-605) 10EA, 캐논코리아(IR-323K) 4EA
※ 경제성, 기능성, 편의성, 사후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제품 선정

I 녹색제품 구매지침 개요

○ 설비 유지관리 일반시방서에 녹색제품 구매명시(한국서부발전)

작성부서 : 대안발전본부

일반시방서

작성일자 : 2012. 08.

작성일자 : 2012. 08.

공 사 명 : 대안발전본부 해수온도 연속측정설비 유지 정비

1. 용역개요 : 대안발전본부 해수온도 측정설비 측정부 12개 지점 및 수신부 1개소에 대해 계속 및 자료 송수신 및 지장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유지, 관리하기 위한 용역임. 용역으로 설비가 항상 정상적으로 동작되게 점검·정비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등급 및 적용표준 : S

3. 용역범위 : 해수온도 측정설비 위탁정비·점검
○ 분기별 1회 점검 : 청밀점검 및 간이점검
○ 특별 점검 : 돌발 사고 시 또는 감독부서의 특별점검 지시의 경우

4. 일반조건 : 가.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계약업체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대한 제반관리 및 서류 작성제출과 준공검사 입회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작업시 현장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해상 항로표지물 점검 시 당일의 기상상태를 정확히 알기가 불순할 경우 출항하지 않으며 해상점검 중 일기가 고르지 못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회항한다.

나. 용역의 시행 : ○ 계약업체는 착공제 제출 전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충분히 검토 및 확인한다.
○ 계약업체의 의무 : 계약업체는 용역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다음의 책임을 수행한다.
-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점검
- 안전점검 및 재해에 대한 책임
- 용역의 최종 인수전까지 보호책임

확 인 : 

공 사 명 : 대안발전본부 해수온도 연속측정설비 유지 정비 작성번호 : 3 / 11

○ 정기점검 후 차기 점검시까지의 기간 중 계약물의 기능상 장애로 인하여 추가정비가 요구될시 계약업체는 감독원의 정비 통보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점검·정비작업에 착수한다.

○ 설비 유실 등 비상상황 발생시 24시간 이내 작업에 착수하여 유선통보 후 서면 보고한다.

나. 자재관리 : ○ 계약업체는 지입자재 및 추가 공사통보서에 의해 발생되는 자재를 사전에 수배하여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을 위하여 반입하는 모든 장비와 장비용 자재는 용역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미검수 및 불합격 자재를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나 불안전한 자재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자재 등이 발견되면 즉시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 지입자재는 지입자재 검수요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고 검수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교환하여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 지입자재는 해당 구매품목에 녹색제품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 지입자재 검수요청서 제출시에는 지입자재의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 첨부된 사진에는 지입자재명, 사용처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준공시 제출되는 작업 사진대장에는 지입자재의 사용 전·후가 비교되는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 검수된 지입자재 및 장비가 도난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즉각 보충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자재보관시 취급부주의 또는 고의에 의한 자재 손상에 대해서 변상처리 한다.
○ 계약업체가 시공불량으로 인하여 재시공시 불충분 해당 시공자재는 계약업체 부담으로 보충한다.
○ 시공자재 인도장소는 대안발전본부 자재창고에서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대본, 자재 및 장비 후 잔여자재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수 후 반입한다.

사. 노동관리 : ○ 계약업체는 점검·정비에 고용된 정비원 노동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작업과 무관한 지역의 출입을 일체 통제한다.
○ 감독원은 본 용역에 배치된 정비원의 자격 및 기술수준도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대해 계약업체는 협조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본 용역에 배치된 정비원의 경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정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해당직원을 즉각 교체하여 용역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업체에서 책임을 진다.

확 인 : 

II 녹색제품의 구매

III 행정사항

□ 기관 내부 평가지표 반영, 인센티브 부여

○ 동 주민센터 평가시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지표 반영(안산시)

동 주민센터 세부 평가기준(총괄)					
구분	영역	평가항목(평가기준)	산출가치	가중치	배점
주 민 센 터 부 문 (100)	정량 지표 (70)	총 점			200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기준배출량(09대비 감축 목표 12% 이상 달성	35	35
		① 일반 주민센터 - 13년 감축목표 : 기준(09대비 12% 대상 : 고잔1동, 대부동, 반월동, 천안2동, 부곡동, 사1동, 사2동, 천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성포동, 하산동, 와동, 현곡1동, 이동, 현곡2동, 월피동	감축목표 10% 이상 ~ 12% 미만	25	
			감축목표 8% 이상 ~ 10% 미만	15	
		② '09년도 24시간 운영 주민센터 - 13년 감축목표 : 기준(10대비 12% 대상 : 호수동, 본오3	감축목표 0% 이상 ~ 8% 미만	10	
		③ 신규청사 임시청사 별도 평가 - 6개월 상·하반기 순위를 가중치 배점 ④ 12년 대비 감축률 대상 : 사3동, 초지동, 일동, 현곡1동, 본오1동, 고잔2동	감축목표 미달성 (배출량 증가)	0	
	2	- 녹색제품 구매율	구매율 50%이상	30	30
		▶ (녹색제품 구매금액 / 총 구매액)×100 녹색제품 구매 : 조달청, e-마켓, 안산친환경지원센터 구매실적	구매율 40% 이상 ~ 50%미만	20	
		▶ 녹색제품구매촉진법에 근거 하여 판단	구매율 30% 이상 ~ 40%미만	10	
	3	- 평가 자료제출 등 추진의 적극성	기한내 자료 제출	5	5
		▶ 기한내 관련자료 제출	기한내 자료 미제출	0	
	정성 지표 (30)	- 녹색생활실천 추진실적 평가 : 결과보고 기준 (동 주민센터 공간)			20
		-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추진실적	1~10	
		▶ 청사 에너지절약계획 및 이행 실적	실적 없음	0	
		- 친환경사무실 조성 추진실적	추진실적	1~10	
		▶ 청사 녹색공간 조성 실적	실적 없음	0	
	5	- 가정환경안전제품(탄소포인트 및 그린카드) 관련 협조 및 추진실적	담당자 지정, 협조 우수 담당자 지정, 협조 보통 담당자 미지정	6~10 1~5 0	10

○ 내부 경영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반영(국민건강보험공단)

3 중무관리실				
본부(Headquarter), 지역본부(Regional-headquarter), 중장기 전략과제(Stratgy), 정부평가(Government), 재정안정(Finance)				
부 명	평가지표	배점	유형	연계
중무부	1. 내외부 고객 만족을 위한 중추적 역할 수행 - 경영진과 직원 및 가족, 노사가 함께하는 열린 행사 추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지원 및 업무 효율화 - 소외계층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추진 -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 및 미래지킴이 프로젝트 추진	45	비계량	H
	2.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및 국가유공자 자 활용사촌 생산품 구매 이행률 개선	6	계량	H-R-G
	3. 사회적기업생산품·서비스 구매율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율 개선	2.5	계량	H-R-G
	4. 중소기업·여성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율 개선	3.5	계량	H-R-G
	5. 녹색제품 구매율 개선	3	계량	H-R-G

- 관리자정보시스템 구축 및 녹색제품 구매정보 제공(한국전력공사)
 - 경영간부 대상 주요 정보제공 시스템 운영



- 자재구매관리시스템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품정보 등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부서담당자, 구매담당자의 녹색제품 구매 체계화



□ 조달물품 구입의뢰 절차 개선으로 구매율 증대

- 사업부서 조달물품 구입 시 녹색제품 담당부서 협조 후 구매 의뢰(부산시)
 - 녹색제품 미구매 시 미구매사유서 첨부 후 조달구매 의뢰
 - ※ 부산광역시(본청)의 경우 제도 시행 후 구매율이 약 2배 상승

기존	변경
사업부서 구매요구 → 구매 처리 부서 승인	사업부서 구매요구 → 녹색제품 담당부서 협조 → 구매 처리 부서 승인

붙임 4

녹색제품 대상품목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제품
사무/교육 /영상/가전	사무기기	복사기	다기능프린터, 복사기, 다기능복사기, 사무기기트레이 또는 지급장치
		팩시밀리	레이저 팩시밀리, 팩시기기
	가전제품	세탁기	가정용세탁기
		식기세척기	가정용식기세척기
		냉장고	냉장냉동겸용장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
		텔레비전 및 비디오프로젝터	텔레비전(LCD, LED, PDP), 비디오프로젝터, 일체형DVD, 비디오, CD플레이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처리기
		에어컨디셔너	냉방기, 열펌프, 냉난방기
	가구	책상(탁자)	응접탁자, 화장대, 회의용탁자, 보조책상, 전화탁자, 사회대, 사전대, 교탁, 컴퓨터책상, 칸막이형열람대, 학생용책상, 수강용탁자, 실습대, 이동식스툴테이블, 경사진열람대, 공용테이블, 실험실용싱크대, 실험대, 수장고용수납장, 유아용탁자, 산업용작업대, 보조책상, 사회대, 책상, 옥외용탁자
		의자	소파, 의자, 교실용결상, 책상용컴비의자, 스톨의자, 라운지용의자, 작업용의자, 강당,경기장용 의자 또는 특수목적의자, 옥외용벤치, 옥외용의자, 접이식의자
		보관용 가구	보관용선반, 공구보관용함, 상자또는캐비닛, 공구정리대, 책장, 장롱, 의장용캐비닛, 이동형파일서랍, 파일링캐비닛또는엑세서리, 크레덴자, 책선반, 서랍형수납장, 기타미분류가구, 장식품장, 청소도구함, 이동식서가, 도서관CD또는카세트진열대, 컴퓨터본체보관장및받침대, 텔레비전보관장및받침대, 찬장, 신발장, 캐비닛, 잡지꽂이, 로커, 옥실용거는수납장또는선반,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전시용진열대, 출석부보관장, 유아용교구장
		침대 및 침대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
		주방가구	기타주방용품, 가정용싱크대, 종이보관장, 식탁, 가정용조리대
		기타 가구 및 부속품	책꽂이, 서류상자또는서류함, 교단, 교탁, 카운터, 책운반기, 패널시스템일부또는그부속품, 패널시스템용보관함, 신문걸이대, 페디스탈(받침대), 프로젝터스탠드또는카트, 화분대, 거울, 다리미판, 우산꽂이, 가리개용칸막이, 옷걸이, 강연대, 칠판보조장, 신문걸이대, 우편물분류함또는정리함, 우편함, 기표용품,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및엑세서리
	OA칸막이 (파티션)	OA칸막이	사무용 칸막이, 화장실용 칸막이, 패널시스템용 칸막이
	지류	인쇄용지	필기용지, 신문용지절지, 백판지, 화방용지및아트지, 프린터라벨, 교육용또는직업용도서, 포장지, 옵셋인쇄용지, 신문용지절지, 표준신문용지
		사무용지	컴퓨터출력용지, 프린터또는복사기용지, 문방용지, 레자크지, 종이패드및공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제품
		기타지류	클레이코팅지, 실리콘코팅지, 기타인쇄물
	일반사무 용품	필기구 및 필기구 소모품	디지털윤전기등사잉크, 칠판지우개및액세서리, 목재연필, 사인펜, 유화오목또는평판잉크, 지우개, 매직펜류, 볼펜
		기타 사무용품	접착식메모용지, 종이테이프, 포장용테이프, 사무용테이프, 일반행정공통서식, 잡지또는책표지, 유공바인더, 접착제, 종이커터또는리필, 표준봉투, 달력, 결재함, 서류정리케이스, 사무기기용세정액, 전자제품 및 부품설치, 우드섹션액자(額子), 여가용도서, 빗자루, 문서홀더, 클립보드, 파일폴더, 스티커, 겔표지
전자 /정보 /통신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컴퓨터	워크스테이션및데스크탑컴퓨터, 데스크톱컴퓨터, 서버컴퓨터보드, 소형컴퓨터, 개인컴퓨터, 일체형컴퓨터, 태블릿컴퓨터
	노트북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
	모니터	컴퓨터용 모니터	CRT 모니터, LCD패널 또는 모니터
		전자판서 모니터	액정모니터
	프로젝터	디지털 프로젝터	디지털 프로젝터(LCD, DLP)
	카트리지	카트리지	신품 토너카트리지, 재생 토너카트리지, 팩시밀리용 신품 토너카트리지
섬유 /고무 /위생 /여가	의류	작업용 의복	야광조끼, 위험물질방어의류, 방열복, 사원복, 단체급식준비또는제공용의상, 우의 및 방수복, 방한복, 여성용작업복및근무복, 남성용조끼, 기동복, 소방복
		군용 및 경찰용 의복	방탄조끼, 정복, 보호용작업복, 전투복, 판초
		기타 의복	수의, 남성용외투
	개인장구	개인장구	면평직물, 장갑, 테모자, 허리띠또는벨트, 양말, 세면용수건, 식탁보, 행주, 고무또는비닐매트, 손수건, 유골함, 수세미, 청소용걸레,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 가스마스크, 마스크또는보조용품, 안전헬멧, 팔꿈치보호대, 무릎보호대, 의류대, 개인용소형가방, 신발안창, 기타운동화, 남성용운동화, 남성용슬리퍼, 남성용구두, 남성용부츠, 남성용운동복, 인형, 면도기, 칫솔, 배낭, 핸드백또는지갑, 호신용장갑, 휴대전화기, 면포대
		침구	합성섬유솜, 이불, 매트리스커버, 요, 배갯잇, 방석, 침대덮개, 담요, 베개, 이불커버, 누비이불, 침낭
	위생용품	비누	가루세탁비누, 고형비누, 세탁비누, 화장비누, 범용세척제
		세제 및 세정제	청소용패드, 손세정제, 샤워젤, 화장실세정제, 식기세척제, 탈취제, 기름제거제, 유리또는창문세척제
		방향·소취제	방향제, 탈취제, 향수
		화장지 및 종이·에어타월	두루마리 화장지, 종이타월, 손건조기, 미용화장지
		식품용기	상업용컵또는머그컵, 기타박엽지, 가정용일회용접시, 가정용스쿠프, 주방용칼, 이쑤시개, 개인용물통, 가정용반찬통, 젓가락, 스푼, 포크, 가정용도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제품
		봉투	쓰레기봉투, 플라스틱포대, 쇼핑백
		포장용기	포장용기, 포장트레이
	포장재	기타 포장재료	포장재, 골판지원지, 쿠키호일, 버블랩
	여가용품	여가용품	자전거용튜브, 자동차임대서비스, 낚시릴, 자전거용타이어, 완구
화학 /소방 /안전	화공약품	수처리제	수처리 응집제, 수처리제, 철제어침가물
		산업용 탈취제	산업용 탈취제
	소방방제	소화용구	간이소화용구, 수동식 소화기, 포소화약제, 경보장치
	실내연료유	난방연료	실내등유
차량 /운반	차량용품	차량용 타이어	승용차용 타이어, 트럭·버스용 타이어
		차량용 엔진오일	가솔린 자동차용 엔진오일, 디젤 자동차용 엔진오일
		유압작동유	유압작동유
		자동차부동액	자동차부동액
		비석면 운송부품	드럼브레이크, 디스크브레이크, 브레이크라이닝, 드럼브레이크슈
		기타 차량용품	엔진용공기여과용엘리먼트, 자동차범퍼가드, 차량부품 세척기, 공기여과기, 타이어공기주입기, 시트커버
전기 /시험 /계측	발전장치	축전지	밀폐형납축전지, 니켈수소축전지, 니켈카드뮴축전지, 연산축전지, 리튬전지
	램프 및 안정기	형광램프	형광램프, 콤팩트형광램프, 등안정기, 투광조명, LED 램프
		등기구	다운라이트설비, 천장조명설비, 경관조명, LED실내조, 명등, 신재생에너지가로등, 거주로조명설비, 도로조명 설비LED램프, LED등기구, LED가로등
		램프용 안정기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자기식 안정기,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형광램프용 안정기
	가로등	가로등	태양광 가로등
	전기자재	전선케이블	내열케이블, 전력케이블, 제어케이블
	기타 전기자재	기타전기자재	줄자, 레벨센서및트랜스미터, 전자탐침봉, 수질시료채취기, 공기순환기, 와이어링트로프
기계 /설비	냉온수기 및 정수용품	정수용품	냉온수기, 정수장비, 정수기
	보일러	가스보일러	천연가스동력보일러, 소형기름보일러, 온도조절기
	수도자재	절수형 수도꼭지	절수형 수도꼭지, 절수밸브
		수도꼭지 절수부속	수세밸브, 플로우트밸브, 절수장치
		샤워용품	샤워헤드, 욕조
		절수형 양변기	절수형 양변기, 비대
		양변기용 부속	절수세척밸브, 절수형부속, 로탱크 절수부속
		수도계량기	진공밸브, 체크밸브, 수량계
		수도계량기 보호통	그리스트랩, 수량계보호통, 밸브보호통 또는 밸브실
		수도용 급수관(순서)	수도용 급수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제품
	일반기계 설비	소변기	도기질 소변기, 소변기, 이동설치식 소변기
		산업용 세척기	산업용 세척기
		기타 기기	옥내용 발광다이오드 전광판, 태양광 자동음성 문자방송기, 태양광 재난비상방송기기, 재활용품자동회수기
토목 /건축	아스콘	아스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개질재
	투수콘	투수 콘크리트	투수 콘크리트 제품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시멘트, 천연골재
	일반 폐복관	배수관	배수관, 파형강관이음관, 플라스틱복합관, 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폴리에틸렌관, 경질폴리염화비닐관, 폴리에틸렌이중벽구조 하수도관,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배수로
	배수조 및 오수받이	배수조	폴리에틸렌물받이
		오수받이	오수받이, 오수분리벽, 정류벽
	블록	보도블록	고무블록, 보도블록, 보차도용블록, 석재블록, 안전유도블록, 점자블록
	블록	호안블록	건치블록, 식생블록, 어도블록, 여울블록, 옹벽블록, 호안블록, 유공블록
	블록	기타 블록	경계블록, 계단블록, 기둥보호용 블록, 내장용 블록, 보호블록, 세굴방지블록, 인터로킹 블록, 자전거도로용블록, 잔디블록, 주차블록, 경계블록, 차선분리용 블록
	골재	골재	슬래그골재, 순환골재
	타일	타일	석재타일및판석, 세라믹타일또는판석
	벽돌	벽돌	내장용 벽돌, 점토벽돌, 콘크리트벽돌, 세라믹벽돌
	경계석	경계석	경계석, 인조경계석
	가로수 보호판	가로수 보호판 및 지주대	가로수보호판, 수목보호 지주대
	창호	창호	스틸 창세트, 알루미늄 및 합성수지 창세트, 창틀, 창
	페인트	페인트	도료, 마감도료, 수성도료, 유성도료, 수분산형 도료, 분체 도료, 수도관 내부코팅용 도료, 수성페인트, 에멀전 퍼티
	벽지	벽지	벽지, 종이벽지, 초배지
	보온단열재 및 흡음재	보온단열재 및 흡음재	기포단열재, 압출폴리스티렌단열재, 외벽패널, 고무발포단열재, 흡음용천장재, 방음벽및방음판, 뽀뽀단열재,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 섬유단열재
	건설용 방수재	건설용 방수재	발수방수재, 방수혼화제, 방수시트, 방수시트, 채광지붕재, 차수매트, 방습지, 기타방수재, 무기질도막방수재, 무기질도막방수재, 아스팔트도막방수재
	바닥재	바닥장식재	합성목재, 데크재, 목재마루재, 비닐바닥재, 이중바닥재, 옥외바닥재, 석재및타일바닥재
	바닥재	고무바닥재	고무마루재, 건부직포섬유, 포설형탄성포장재
	조립식 바닥 난방시스템	조립식바닥 난방시스템	난방패널, 난방용전열관
	마감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세라믹기와, 장식스티커, 천장패널, 석고보드, 외벽단열마감재, 금속재울타리, 벽패널, 벽판재, 특수지붕재
	접착제	접착제	몰딩, 풀, 에폭시접착제, 화학접착제, 절연테이프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데코레이션 시트, 인테리어 시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부 제품
	동합금	동합금 제품	황동합금, 동합금, 동합금관
	기타 토목건축	기타 토목건축자재	규조토, 콘크리트파일, 금속기둥, 받침블록, 스틸그레이팅, 생식회, 맨홀박스, 전광판, 조정시설물, 배수관, 기타자재울타리, 금속기와, 특수타일밧판석, 콘크리트타일밧판석, 미끄럼방지바닥포장재, 토목섬유, 지반배수용구조재, 경량기포혼합토, 배수제,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이음관, 플라스틱덮개, 모서리보강재, 인조잔디, 탄성포장재, 하수악취차단장치, 교량난간, 맨홀보조물, 철근콘크리트근가, 목재판재
도로시설 /용품	교통표지판 (도로안 내표)	표지판	교통표지, 안내판, 전광판, 도로명주소표지판, 안전표지판, 루프코일
	도로분리대 및 난간	도로분리대 및 난간	차선분리대, 도로중앙분리대
	흡음판	방음벽 및 방음판	방음벽 및 방음판
	도로용품	기타 도로용품	제설함, 안전칸막이, 블라드, 눈밧얼음용해장치, 제설제 또는서리제거제, 시선유도봉, 도로표지병, 도로안전표지드럼, 차광유도판, 테이프형차선, 충격완충장치, 과속방지턱, 트래픽콘또는텔레네이터, 카스트퍼
원부자재 /기타	육묘상자	육묘상자	육묘상자
	인공어초 및 부자	인공어초 및 부자	인공소라
	토랑개랑제	토랑개랑제	석회비료, 유기질비료, 퇴비또는조분석
	기타	기타 원부자재	폴리에스테르섬유, 바이오플라스틱필름, 콘크리트보강섬유, 연마광택재, 숙박서비스, 자동차보험, 배수용 주철이형관, 배수용 주철관, 스마트카드, 인공어초, 압축된섬유시트, 폴리에틸렌필름, 코팅천, 재생고무, 요소수지, 인조피혁

중요! < 구매실적, 구매계획 제출절차(소속·하위기관이 없는 경우) >

(공통)

STEP 1) 녹색구매정보시스템(<http://gd.greenproduct.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기 등록되어 있는 의무구매기관 사용자의 경우 로그인 방법이 변경 되었으니 반드시 로그인 방법 확인 필요.

※ 소속기관이 있는 상위기관(본청 등)과 소속기관이 없는 하위기관은 구매 실적·계획 제출순서가 상이하니 반드시 작성방법 확인 필요

STEP 2) [구매실적·계획 입력] 메뉴에서 내용 입력 후 저장, 제출버튼 클릭

STEP 3) [구매실적 입력] 메뉴에서 내용 입력 후 전년도 구매계획 대비 3%

저조 할 경우 품목별 미구매 사유 입력 후 등록버튼 클릭

STEP 4) [구매실적 입력] 메뉴에서 내용 입력 후 전년도 구매실적 대비 30%

이상 감소 하거나 50% 이상 증가 한 경우 증감사유 입력 후 등록버튼 클릭

STEP 5) [구매실적·계획입력현황] 메뉴에서 제출된 실적·계획 자료가

상위기관 또는 환경산업기술원 승인 전 일 경우 회수 버튼 클릭 시 작성 중 상태로 전환 됨.

중요! <구매실적, 구매계획 제출절차(소속·하위기관이 있는 경우)>

(공통)

STEP 1) 녹색구매정보시스템(<http://gd.greenproduct.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기 등록되어 있는 의무구매기관 사용자의 경우 로그인 방법이 변경 되었으니 반드시 로그인 방법 확인 필요.

※ 소속기관이 있는 상위기관(본청 등)과 소속기관이 없는 하위기관은 구매 실적·계획 제출순서가 상이하니 반드시 작성방법 확인 필요

STEP 2) [구매실적·계획 입력] 메뉴에서 구매실적·계획 입력 후 저장, 등록 버튼 클릭

STEP 3) [구매실적 입력] 메뉴에서 내용 입력 후 전년도 구매계획 대비 3% 저조 할 경우 품목별 미구매 사유 입력 후 등록버튼 클릭

STEP 4) [구매실적 입력] 메뉴에서 내용 입력 후 전년도 구매실적 대비 30% 이상 감소 하거나 50% 이상 증가 한 경우 증감사유 입력 후 등록버튼 클릭

STEP 5) [구매실적·계획 승인및반려] 메뉴에서 소속 하위기관들의 실적 승인 또는 반려 처리 (반려 시 반려사유 입력)

STEP 6) [구매실적·계획 합산및제출]메뉴에서 합산하기 버튼 클릭

STEP 7) 최종 합산된 자료 확인 후 저장, 제출

STEP 8) [구매실적·계획입력현황] 메뉴에서 제출된 실적·계획 자료가 상위기관 또는 환경산업기술원 승인 전 일 경우 회수 버튼 클릭 시 작성 중 상태로 전환 됨.

STEP 9) 본부에서는 구매실적·구매계획을 자체 홈페이지(공지사항)와 동시스템 [공표현황등록]에 공표



□ 로그인 전

○ 녹색구매정보시스템 접속 - gd.greenproduct.go.kr

녹색구매정보시스템 메인 화면

녹색구매란? 녹색구매 사용방법 녹색제품사용 교육신청 기관등록

공지사항 FAQ 수법기관 소식지

1544-2660
공공기관 청문 상담해 드립니다

(1) 주소창에 <http://gd.greenproduct.go.kr> 검색 또는 네이버 검색창 녹색구매정보시스템 검색 후 접속
(2)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킷 링크로 접속가능
(3) 녹색구매 제도 온라인 교육, 시스템 사용방법,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 교육신청, 기관등록 이용 가능

○ 녹색구매제도 온라인 교육 콘텐츠 이용

녹색구매제도 교육 안내

녹색구매 제도의 이해 온라인 교육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의 이해

(1) ①녹색구매란? 에 마우스 이동(녹색구매 제도의 이해 온라인 교육으로 이미지 변경) 후 클릭
(2) ②녹색구매 제도의 이해 온라인 교육 팝업

III

교육신청 절차 <2/2>



교육신청

Home > 교육/워크샵 > 교육신청

※ 교육장소별 교육대상 :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지방, 교육), 공사·공단, 기타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 교육은 각 권역별 지자체와 교육청 등 모든 기관이 동일한 날짜에 시행합니다.
 ※ 교육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가 마감된 경우 현장접수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표정이 부족할 수도 있으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택	교육명 (장소)	교육일시
교육신청이 가능한 일정이 없습니다.		
		교육신청확인 신청



①

③

②

- (1) 교육장소별 교육대상이 공지되어 있으면 ①교육일시와 장소를 확인 후 선택
- (2) ②해당 교육 선택 후 신청 버튼 클릭
- (3) ③교육신청 확인 및 교육이수증 관련 내용 조회를 원할 시 해당 버튼 클릭

○ 교육신청확인 및 교육이수증 발급

교육신청확인 및 교육이수증 발급 <1/2>



교육신청

Home > 교육/워크샵 > 교육신청

신청자명	윤수현	검색
목록		



①

신청일정	소속기관명	신청자명	연락처	이메일
2016 공공기관 녹색구매제도 워크숍 10월 19일(수), 14시~17시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윤수현	010-*****1319	s***@kettl re.kr
2017 부산 울산 경남 녹색구매 활성화 교육 전국 9월 6일(수), 14시~16시 부산광역시 텍스코 제1전시장 내 세미나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윤수현	010-*****1319	s***@kettl re.kr



②

- (1) ①신청자명란에 교육이수자명 작성 후 검색
- (2) ②조회된 내용 클릭

녹색구매정보시스템

로그인

기관등록신청

[Home](#) > [기관등록](#) > [기관등록신청](#)

신청자 성명		신청자 휴대전화	- -
신청자 이메일			
기관명		기관코드	기관코드검색 바로가기
차상위 기관명		최상위 기관명	
기관주소	우편번호 찾기		

등록신청

- ## ★ 수요기관 기관코드 검색 방법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행정표준코드소개 | 기관코드조회 | 코드검색 | 공지사항 | 자주묻는질문 | 기관코드등록안내

코드검색

기관코드조회

코드검색 > 기관코드 조회

①

최하위기관명

기관선택

기관유형선택

소재지선택

배치구분

원하는 유력일목을 아래박스에서 체크하세요.

②

기관코드

전체기관명

최하위기관명

등록일자

0000001	대통령	대통령	등록일자
0000002	국무총리	국무총리	등록일자
0000003	입법부	입법부	등록일자
0000004	사법부	사법부	등록일자
0000005	시도	시도	등록일자

- 78 –

○ 로그인 방법

로그인 방법 <1/4>



green DESK
녹색구매정보시스템

녹색구매란? green DESK 녹색제품사용 교육신청 기관등록

사용방법

Online Edu.

Education Application

KEI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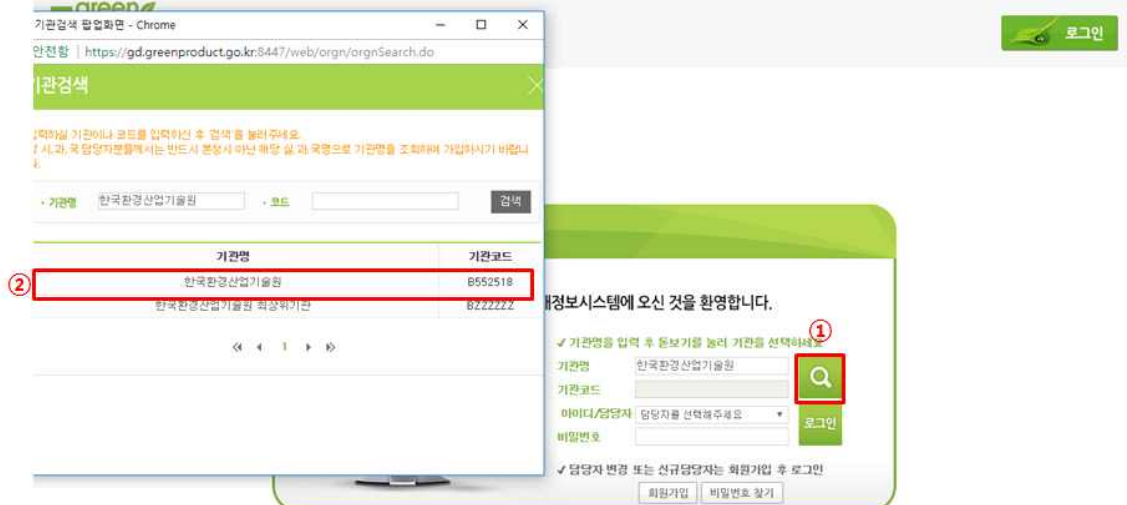
공지사항 FAQ 수평기관 소식지

1544-2660
궁금하신 점을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녹색제품정보 시스템 GREEN PRODUCT 나라장터 녹색구매 녹색건설자재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green'card' 그인을 꺼내세요!

(1) 메인화면 로그인 메뉴에 마우스 이동 후 클릭

로그인 방법 <2/4>



기관검색 팝업화면 - Chrome

안전항 | https://gd.greenproduct.go.kr:5447/web/orgn/orgnSearch.do

기관명 기관코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552518

로그인

정보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관명 기관코드 아이디/담당자 비밀번호

로그인

로그인이 안되실 경우 - 브라우저 설정
로그인이 안되실 경우 - 대체브라우저 사용

(1) 로그인 페이지 전환
(2) 기관명 란에 소속기관명 입력 후 ①돋보기 버튼 클릭
(3) 기관검색 팝업 후 ②검색된 내용 클릭
(4) 팝업종료 후 자동으로 기관명, 기관코드 입력 됨

로그인 방법 <3/4>

로그인

환경산업기술원 녹색구매정보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기관명을 입력 후 돋보기를 눌러 기관을 선택하세요

기관명

기관코드

아이디/담당자

비밀번호

✓ 담당자 변경

로그인

우 - 브라우저 설정
대체브라우저 사용

녹색제품정보 시스템
REEN PRODUCT

나라장터 국가계약정보시스템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녹색장터

녹색건설자재 CATALOG

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greencard
그린을 꺼내세요!

- (1) 아이디/담당자 찾기 버튼 클릭
- (2) 조회된 아이디 및 담당자 확인 후 선택
- (3) 담당자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로그인 후 회원정보 변경
- (4) 아이디 및 담당자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 진행

로그인 방법 <4/4>

로그인

환경산업기술원 녹색구매정보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기관명을 입력 후 돋보기를 눌러 기관을 선택하세요

기관명

기관코드

아이디/담당자

비밀번호

✓ 담당자 변경 또는 신규담당자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

로그인이 안되실 경우 - 브라우저 설정
로그인이 안되실 경우 - 대체브라우저 사용

로그인

우 - 브라우저 설정
대체브라우저 사용

녹색제품정보 시스템
REEN PRODUCT

나라장터 국가계약정보시스템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녹색장터

녹색건설자재 CATALOG

2016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greencard
그린을 꺼내세요!

- (1) 기관명, 기관코드, 아이디/담당자 확인 후 ①비밀번호 입력
- (2) ②로그인 버튼 클릭
- (3)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잊어버린 경우 ③비밀번호 찾기 버튼 클릭
- (4) 로그인 오류시 하단 ④로그인이 안되실 경우 클릭

★ 비밀번호 찾기



(1) 로그인 비밀번호 잊거나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핸드폰번호 입력후 찾기 버튼 클릭

(2) 핸드폰으로 전송된 임시비밀번호로 로그인후 회원정보에서 비밀번호 변경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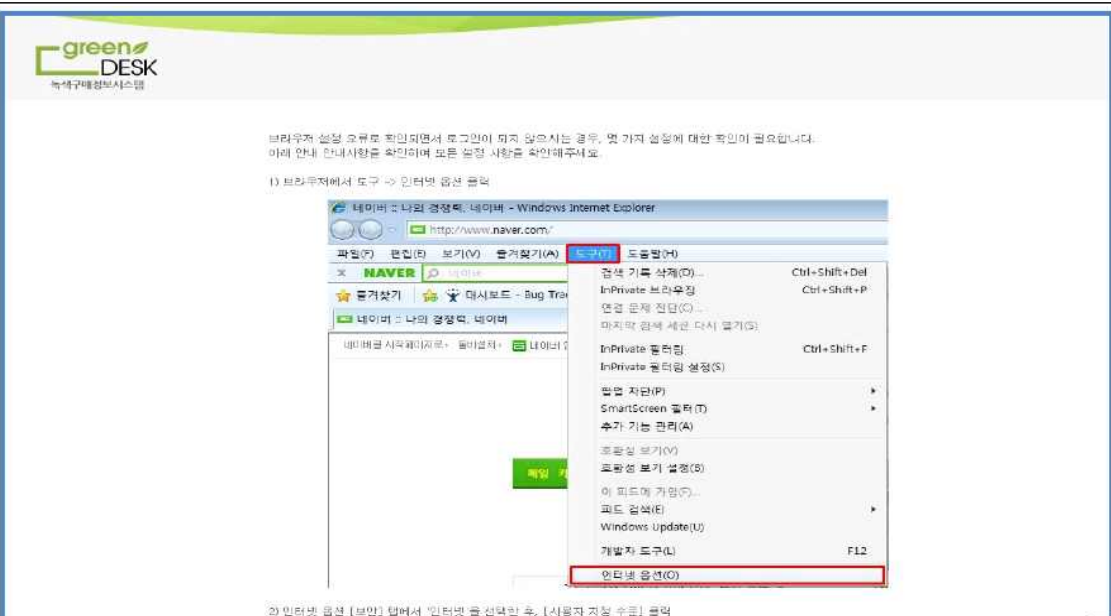
(3) 기존 개인정보에 핸드폰번호 미등록시 임시비밀번호가 전송되지 않음

(4) 개인정보인 비밀번호는 고객센터에서 확인 또는 안내가 지원되지 않음

(5) 해당 아이디 가입자가 아닐 경우 신규회원가입 진행

21

★ 로그인이 안 될시 안내



(1) 로그인 오류시 하단 로그인에 안되실 경우 안내입니다 클릭

(2) 인터넷 익스플로어 브라우저 설정 오류 개선방법 안내페이지로 이동

(3) 브라우저 설정 오류 진행후 모든 인터넷창 종료후 재시작

(4) 공지사항 688번 게시물 (안내)시스템 오류시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 안내 참고

(5) 개선방법 및 공지사항 참고후 지속적 로그인 오류발생시 대표번호 1544-2660으로 문의

22

□ 로그인 후

○ 녹색구매정보시스템 메인화면

녹색구매정보시스템 메인화면

① 구매계획, 구매실적, 구매계획공표, 통계정보, 알림마당, 실적수정, 기관/회원, 교육/워크샵

② 녹색 계획과 실천

2016년 계획: 총구매액 5억, 녹색제품구매액 5억

2016년 실적: 총구매액 8억, 녹색제품구매액 5억

2017년 총구매: 4982만

67.6%

녹색제품 사용, 우리 후손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녹색 환경기여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지사항

· 환경표지 인증취소 공고C... 2017.08.18

· 환경표지 인증취소 공고C... 2017.08.11

(1) 로그인 후 메인화면

(2) 홈페이지 상단 상태표시 바 ①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구매계획 공표 상태를 보여 줌

(3) 홈페이지 가운데 ②녹색 계획과 실천, 녹색 조달구매 비율 확인 가능
(조달청 구매실적 매월 업데이트 반영(하위기관 미포함))

○ 녹색제품 구매계획 입력절차(1/2)

녹색제품구매계획 입력절차 <1/2>

① 계획입력

(A): 일반구매와 녹색구매를 합친 총구매실적내역
(B): 환경마크인증, GPM인증제품 구매내역
(B/A): (A)를 (B)로 나눈 값을 입력하면 해당 분류에 속한 구매계획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전년도데이터불러오기 ③ 저장 ④ 제출

2017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계획

분류	구분	총구매(일반+녹색구매)(A)		녹색구매(B)		비율(%)(B/A)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사무기기	복사기	0	0	0	0	0	0
	복사기	0	0	0	0	0	0
	복사기	0	0	0	0	0	0
	복사기	0	0	0	0	0	0
가전제품	냉장고	0	0	0	0	0	0
	냉장고	0	0	0	0	0	0
	냉장고	0	0	0	0	0	0
	냉장고	0	0	0	0	0	0

(1) 구매계획 하위메뉴 ①계획입력 클릭

(2) 실시간 입력방법: 각 품목별 ②총구매 수량,금액 / 녹색구매 수량,금액 입력란에 숫자 입력(금액은 천원단위)

(3) 엑셀 입력방법: ③표준양식내려받기 버튼 클릭하여 엑셀 양식 다운로드, 엑셀 양식으로 구매계획 작성 및 컴퓨터 저장 후 표준양식올리기 버튼 클릭으로 업로드

(4) 전년도데이터불러오기 방법: ④전년도데이터불러오기 버튼 클릭, 불러온 작년 실적을 참고로 구매계획 수정

(5) 작성 완료 후 ⑤저장, ⑥제출 버튼 클릭

(6) 최종 저장 된 구매계획은 ⑦현재문서내려받기 버튼으로 엑셀 다운로드 가능

○ 녹색제품 구매계획 입력절차(2/2) - 표준양식 이용방법

녹색제품 구매계획 입력절차 <2/2> - 표준양식 이용방법

2017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1 정보

기관명	부서	담당자 및 직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작성일자 : 2017.05.01, 업로드시 : 2017.05.01 작성자 : 관리자, 부서 : 기획관리팀, 담당자 : 김민준, 직책 : 기획관리팀장, 연락처 : 010-1234-5678, 이메일 : kminjun@korea.go.kr

(단위 : 원/%)

녹색제품 분류	입력결과				녹색제품 구매계획 (입력결과)				총합계 (입력결과)				비율산정 (입력결과)				비율 (%)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사무기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전제품	복합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복사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세탁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식기세척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냉장고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공기청정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탈취제 및 비디오 프로세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에너지절감장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복합기(복합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엑셀입력방법 : 표준양식내려받기 클릭 후 다운로드

(2) 표준양식엑셀 녹색제품 구매계획 입력란에 수량, 금액 입력

(3) 입력불가란은 공란으로 비워 둠

(4) 금액란에 반드시 천원단위로 입력, 연산자 사용불가, 엑셀양식 변경 불가

(5) 컴퓨터 저장 후 표준양식올리기로 파일선택 첨부하여 최종적으로 저장, 제출 버튼 클릭

○ 녹색제품 구매계획 승인 및 반려(1/4) - 상위기관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계획 승인 및 반려 <1/4> - 상위기관의 경우

green DESK 녹색구매정보시스템

로그아웃 CO2 Hunting

구매계획 | 구매실적 | 구매계획공표 | 통계정보 | 알림마당 | 실적수정 | 기관/회원 | 교육/워크샵

계획입력 | **계획승인및반려** | 계획합산및제출 | 계획입력현황

계획승인및반려

기관명을 선택하시면 승인 및 반려처리가 가능합니다.
제출상태이거나 반려상태의 계획이 존재할 경우 계획합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년도: 2017 | 소속기관: | 승인구분: 전체

(금액단위 : 원/%)

년도	기관명	총구매(일반+녹색구매)(A)		녹색구매(B)		비율(%) (B/A)		승인구분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2017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890	1,341	890	1,341	98.9	98.9	상위기관 승인
2017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586	1,341	526	1,341	89.8	89.8	상위기관 승인
2017	환경부 환경유역환경청	1,341	1,341	953	1,341	71.1	71.1	상위기관 승인
2017	환경부 환경정책연구소	36	1,341	17	1,341	47.2	47.2	상위기관 승인
2017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523	1,341	393	1,341	75.1	75.1	상위기관 승인

(1) 소속 하위기관을 가진 상위기관일 경우 (상위 또는 최상위기관) 해당 메뉴 사용

(2) 구매계획의 하위메뉴에 계획승인 및 반려 버튼 클릭

(3) 승인구분란에 제출상태인 소속하위기관의 실적목록이 조회됨 (미제출기관 제외)

(4) 상위기관 담당자는 기관명을 선택하여 소속하위기관의 제출된 구매계획을 승인 또는 반려함

○ 녹색제품 구매계획 승인 및 반려(2/4) - 상위기관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계획 승인 및 반려 <2/4> - 상위기관의 경우

green DESK 녹색구매정보시스템

구매계획 | 구매실적 | 구매계획공표 | 통계정보 | 알림마당 | 실적수정 | 기관/회원 | 교육/워크샵

계획입력 | 계획승인및반려 | 계획합산및제출 | 계획입력현황

계획승인및반려

기관명을 선택하시면 승인 및 반려처리가 가능합니다.
제출상태이거나 반려상태의 계획이 존재할 경우 계획합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① 년도 2017 ② 소속기관

현재문서내려받기

년도	기관명	총 구매(일반+녹색구매)(A)	
		수량	금액(천원)
2017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890	
2017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586	
2017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1,341	
2017	환경부 화력발전안전원	36	
2017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523	

기관명 검색창 옆 돋보기 버튼 클릭
팝업창에 검색된 기관명 입력 또는 소속하위기관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조회된 기관 선택하여 상세 구매계획 확인 가능

○ 녹색제품 구매계획 승인 및 반려(3/4) - 상위기관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계획 승인 및 반려 <3/4> - 상위기관의 경우

green DESK 녹색구매정보시스템

구매계획 | 구매실적 | 구매계획공표 | 통계정보 | 알림마당 | 실적수정 | 기관/회원 | 교육/워크샵

계획입력 | 계획승인및반려 | 계획합산및제출 | 계획입력현황

계획승인및반려

기관명을 선택하시면 승인 및 반려처리가 가능합니다.
제출상태이거나 반려상태의 계획이 존재할 경우 계획합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① 승인구분 ② 검색

현재문서내려받기

년도	기관명	총 구매(일반+녹색구매)(A)		녹색구매(B)		비율(%) (B/A)		승인구분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2017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890		880		98.9		상위기관 승인
2017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586		526		89.8		상위기관 승인
2017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1,341		953		71.1		상위기관 승인
2017	환경부 화력발전안전원	36		17		47.2		상위기관 승인
2017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523		393		75.1		상위기관 승인

① 승인구분 선택 후 다수의 소속하위기관을 가진 상위기관은 ①승인구분에 따라 관리 가능
② 승인구분 상태 선택 후 ②검색 버튼 클릭
③ 승인된 기관 확인 또는 반려된 기관을 조회하여 구매계획 집계에 용이

○ 녹색제품 구매계획 승인 및 반려(4/4) - 상위기관의 경우

녹색제품구매계획 승인 및 반려<4/4> - 상위기관의 경우

계획승인및반려

기관명 및 작성자 정보

기관명 및 작성자 정보	부서	담당자명/직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	주우관 이윤진	0325907632	0325907059	hyun1040@korea.kr

계획 등록 정보

녹색구매분류	총구매(합산+녹색구매)(A)		녹색구매(B)		비율(%) (B/A)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합계	890		880		98.9	
사무기기						
복사기	1		1		100	
복사밀러	0		0		0	
세탁기	1		1		100	
식기세척기	0		0		0	
냉장고	0		0		0	
공기청정기	0		0		0	
텔레비전 및 비디오프로젝터	1		1		100	
음식물쓰레기 갈항화기	0		0		0	
에어컨디셔너	0		0		0	
책상(탁자)	40		40		100	

(1) 계획승인 및 반려 목록에서 기관명 클릭하여 상세페이지로 이동
 (2) 선택된 소속하위기관의 기관명 및 작성자 정보 확인
 (3) 작성된 구매계획의 반려사유가 없는지 확인 후 이상 없으면 ①승인 버튼 클릭
 (4) 반려사유가 발견되면 ②반려 버튼 클릭 후 반려사유를 기재, 하위기관에 반려내용 안내하여 재제출 유도
 (5) 승인 또는 반려 후 ③목록 버튼 클릭하여 목록 페이지로 이동

○ 녹색제품 구매계획 합산 및 제출(1/2) - 상위기관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계획 합산 및 제출<1/2> - 상위기관의 경우

계획합산및제출

계획 제출 정보

년도	기관명	총구매(합산+친환경구매)(A)		친환경구매(B)		비율(%) (A/B)		승인구분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2017	환경부	1,787,739		1,302,835		72.9		등록
2017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890		880		98.9		상위기관 승인
2017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586		526		89.8		상위기관 승인
2017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1,341		953		71.1		상위기관 승인
2017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96		17		17.7		상위기관 승인
2017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523		393		75.1		상위기관 승인

(1) 구매계획의 하위메뉴 계획합산 및 제출 버튼 클릭
 (2) 최상위 또는 차상위기관의 구매계획의 승인구분이 ①등록 상태인지 확인
 (3) 소속하위기관의 구매계획이 ②모두 상위기관 승인 상태인지 확인
 (4) 전체 계획을 합하여 최종 구매계획 제출을 위해 ③합산하기 버튼 클릭
 (5) 반려된 기관이 있거나, 미승인 기관이 있을 경우 합산하기 불가능

○ 녹색제품 구매계획 합산 및 제출(2/2) - 상위기관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계획 합산 및 제출<2/2> - 상위기관의 경우

① 합산하기 버튼 클릭하면 합산된 구매계획 조회 가능
 ② 합산된 구매계획에 이상이 없으면 ①저장 버튼 클릭
 ③ 최종 확인 후 ②제출 버튼 클릭

○ 녹색제품 구매계획 입력현황 - 하위기관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계획 입력현황<1/1> - 하위기관의 경우

① 년도 선택하여 이전년도 제출이력 확인 가능
 ② 승인구분 상태 확인 (단일기관, 하위기관의 경우: 저장, 제출, 상위기관 또는 기술원승인, 반려)

III
해저사화

○ 통계정보 - 총괄구매실적(1/2)(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계정보- 총괄구매실적 <1/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green DESK 녹색구매정보시스템

구매계획 구매실적 구매계획공표 통계정보 알림마당 실적수정 기관/회원 교육/워크샵

총괄 구매실적

시/군/구별 총괄 구매실적

① 2017 하위기관 기본조회기관 서울특별시

② 합계(113개 기관)

조달구매실적(A)			신규실적 추가(B)		조달구매실적 제외(C)		녹색장터 구매실적(D)		이호조 구매실적(E)		구매실적 총합계(A+B-C+D+E)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비율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비율
조달된 목록 실적합계(총액별 조회)		50.2	0	0	0	0	0	0	0	0			50.2

※ 기관명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기관명 하위기관수

기관명	하위기관수	조달구매실적(A)			신규실적 추가(B)		조달구매실적 제외(C)		녹색장터 구매실적(D)		이호조 구매실적(E)		구매실적 총합계(A+B-C+D+E)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비율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비율		
서울특별시	본청				0	0	0	0	0	0	0	0		84.8	
서울특별시 서울시립대학교	55				0	0	0	0	0	0	0	0		69.1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54				0	0	0	0	0	0	0	0		58.5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37				0	0	0	0	0	0	0	0		13.4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29				0	0	0	0	0	0	0	0		17.3	

(1) 통계정보 하위메뉴 총괄구매실적 클릭
 (2) ①조회년도, 하위기관 선택 후 검색, 하위기관 선택 없이 조회 시 로그인 한 기관의 하위기관까지 모두 조회 됨
 (3) ②조달 구매실적, 신규실적 추가, 조달구매실적 제외, 녹색장터 구매실적, 총 합계 조회 가능
 (지자체의 경우, 이호조 구매실적까지 조회 가능)
 (4) ③기관별 실적 조회 가능, 기관명 클릭 시 해당 기관의 상세 실적 조회 가능

○ 통계정보 - 총괄구매실적(2/2)(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계정보- 총괄구매실적 <2/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green DESK 녹색구매정보시스템

구매계획 구매실적 구매계획공표 통계정보 알림마당 실적수정 기관/회원 교육/워크샵

총괄 구매실적

시/군/구별 총괄 구매실적

(A): 조달된 연계시스템을 통해 합산된 내역
 (B): 실적수정 - 신규실적 추가요청 내역의 승인된 내역
 (C): 실적수정 - 기존실적 제외요청 내역의 승인된 내역
 (D): 녹색장터 연계시스템을 통해 합산된 내역

① 2017 ② 기본조회기관 서울특별시

③ 합계(5개 기관)

조달구매실적(A)			신규실적 추가(B)		조달구매실적 제외(C)		녹색장터 구매실적(D)		이호조 구매실적(E)		구매실적 총합계(A+B-C+D+E)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비율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비율
조달된 목록 실적합계(상세보기)		33.3	0	0			0	0	0	0			40.3

※ 기관명을 클릭 시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기관명 하위기관수

기관명	하위기관수	조달구매실적(A)			신규실적 추가(B)		조달구매실적 제외(C)		녹색장터 구매실적(D)		이호조 구매실적(E)		구매실적 총합계(A+B-C+D+E)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비율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총구매 금액(천원)	녹색구매 금액(천원)	비율		
서울특별시	112				0	0	0	0	0	0	0	0		50.2	
서울특별시 용마루	53				0	0	0	0	0	0	0	0		45.7	
서울특별시 용구	18				0	0	0	0	0	0	0	0		40.3	

(1) 통계정보 하위메뉴 총괄구매실적 - ①시/군/구별 총괄 구매실적 탭 클릭
 (2) ②조회년도선택 후 검색
 (3) ③시/군/구 별 총괄 구매실적 확인 가능, 기관명 클릭 시 해당 기관의 상세 실적 조회 가능

○ 통계정보 - 총괄구매실적(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경우)

통계정보-총괄구매실적 (지방자치단체이외의 경우)

(1) 통계정보 하위메뉴 총괄구매실적 클릭

(2) ①조회년도, 하위기관 선택 후 검색, 하위기관 선택 없이 조회 시 로그인 한 기관의 하위기관까지 모두 조회 됨

(3) ②조달 구매실적, 신규실적 추가, 조달구매실적 제외, 녹색장터 구매실적, 총 합계 조회 가능

(4) ③기관별 실적 조회 가능, 기관명 클릭 시 해당 기관의 상세 실적 조회 가능

○ 통계정보 - 조달청구매실적(1/5)(구매현황)

통계정보-조달청구매실적 <1/5> (구매현황)

(1) 통계정보 하위메뉴 조달청구매실적 클릭

(2) ①구매현황 탭 클릭

(3) ②조회년도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4) ③하위기관 선택 후 검색 가능 (하위기관 미포함시 체크는 기본 조회기관만 검색 됨)

(5) 조회된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 집계대상품목 구매현황 임

○ 통계정보 - 조달청구매실적(2/5)(구매현황)

통계정보- 조달구매실적 <2/5> (구매현황)

green DESK
녹색구매정보시스템

구매계획 구매실적 구매계획공표 통계정보 알림마당 실적수정 기관/회원 교육/워크샵

출발구매실적 | 조달구매실적 | 녹색장터구매실적

조달청구매실적

구매현황 총구매내역 녹색구매내역

기관본청 조달청 실적내역이 기본으로 조회되며, 하위기관을 포함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년도: 2017 기본조회기관: 환경부

하위기관:

※ 2017년 08월 31일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집계대상품목 구매현황입니다.

분류명	수량	총구매금액(원)	총구매수량	총구매금액(원)
합계	1,145,928			
책상기	11	346.5	100	100
책상일리	1	0	0	0
세탁기	0	0	0	0
식기세척기	0	0	0	0
냉장고	0	0	0	0
공기청정기	1	1,400	0	0

(1) 조회된 내용의 ①금액 클릭하면 ②상세내역 팝업

(2) 총구매내역의 금액 클릭 후 팝업창에는 기준일자 총합계만 제공됨

(3) 녹색구매내역의 금액 클릭 후 팝업창에는 기준일자 상세내역 제공됨

○ 통계정보 - 조달청구매실적(3/5)(총구매내역)

통계정보- 조달구매실적 <3/5> (총구매내역)

green DESK
녹색구매정보시스템

구매계획 구매실적 구매계획공표 통계정보 알림마당 실적수정 기관/회원 교육/워크샵

출발구매실적 | 조달구매실적 | 녹색장터구매실적

조달청구매실적

구매현황 **총구매내역** 녹색구매내역 최근3년구매실적

기관본청 조달청 실적내역이 기본으로 조회되며, 하위기관을 포함하여 조회하실 경우 하위기관 포함 시 체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② 조회년도: 2017 기본조회기관: 환경부 ☐ 하위기관 포함 시 체크

③ 하위기관: 검색

※ 2017년 08월 31일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집계대상품목 구매현황입니다.

엑셀다운로드

기관명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구매수량	구매금액(원)
환경부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0	0
환경부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60	-2,880,000
환경부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1,133	-11,771,000
환경부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32	-1,776,000
환경부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1,133	13,678,000
환경부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32	3,871,000
환경부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57	3,771,000
환경부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1,146	13,680,000

(1) ①총구매내역 탭 클릭

(2) ②조회년도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3) ③하위기관 선택 후 검색 가능 (하위기관 미포함시 체크는 기본 조회기관만 검색 됨)

(4) 조회된 총 구매내역 확인

(5) 총구매 상세내역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공 (<http://www.g2b.go.kr:8060/jsp/out/index.jsp>)

○ 통계정보 - 조달청구매실적(4/5)(녹색구매내역)

통계정보- 조달청구매실적 <4/5> (녹색구매내역)

구매계획

구매실적

구매계획공표

통계정보

알림마당

실적수정

기관/회원

교육/워크샵

총괄구매실적

조달청구매실적

녹색구매실적

조달청구매실적

Home > 통계정보 > 조달청구매실적

구매현황

총구매내역

녹색구매내역

최근3년구매실적

기관별 조달청 실적내역이 기본으로 조회되며, 하위기관을 포함하여 조회하실 경우 하위기관 포함 시 체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② 조회기간

③ 하위기관

기본조회기간

환경부

하위기관 포함 시 체크

검색

※ 2017년 08월 31일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집계대상품목 구매현황입니다.

계약일자	기관명	품종분류번호	품종분류명	품종식별번호	생산업체	구매수량	구매금액(원)
20161107	환경부	30103699	합성목재	21956095	주식회사 임성	315	3,219,000
20170614	환경부	30111597	아스팔트콘크리트	20404314	전남동서아스콘사업협동조합	530	24,994,100
20170511	환경부	30121699	현충락스	21944290	동양특수콘크리트(주)	2	1,944,000
20170511	환경부	30121699	현충락스	21944289	동양특수콘크리트(주)	3	1,076,000
20170511	환경부	30121699	현충락스	21751991	동양특수콘크리트(주)	3	8,120,000
20170511	환경부	30121699	현충락스	21944292	동양특수콘크리트(주)	1	1,076,000
20170511	환경부	30121699	현충락스	22612869	동양특수콘크리트(주)	1	1,944,000
20170511	환경부	30121699	현충락스	22612852	동양특수콘크리트(주)	13	10,113,000

(1) ①녹색구매내역 탭 클릭
 (2) ②조회기간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3) ③하위기관 선택 후 검색 가능 (하위기관 미포함시 체크는 기본 조회기관만 검색 됨)
 (4) 조회된 녹색구매내역 확인
 (5) 마이너스(-) 수량, 금액 내역은 구매계약 취소 또는 계약내용 변경 건 반영

○ 통계정보 - 조달청구매실적(5/5)(최근3년구매실적)

통계정보- 조달청구매실적 <5/5> (최근3년구매실적)

구매계획

구매실적

구매계획공표

통계정보

알림마당

실적수정

기관/회원

교육/워크샵

총괄구매실적

조달청구매실적

녹색구매실적

조달청구매실적

Home > 통계정보 > 조달청구매실적

구매현황

총구매내역

녹색구매내역

최근3년구매실적

조회 월이 기준이 되어 최근 3년동안의 1월부터 조회월까지의 누적 실적을 조회합니다.
 (예)6월 선택 : 각 년도별로 1월부터 6월까지 누적된 실적 조회

② 조회 월

조회 월 선택

기본조회기간

환경부

검색

엑셀다운로드

기관명	2015년			2016년			2017년		
	총구매금액	녹색구매금액	비율	총구매금액	녹색구매금액	비율	총구매금액	녹색구매금액	비율
환경부	1,000,000,000	100,000,000	10%	1,000,000,000	100,000,000	10%	1,000,000,000	100,000,000	10%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조정위원회	1,000,000,000	100,000,000	10%	1,000,000,000	100,000,000	10%	1,000,000,000	100,000,000	10%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한강환경감시대	0	0	0%	0	0	0%	0	0	0%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구미환경출장소	0	0	0%	0	0	0%	0	0	0%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1,000,000,000	100,000,000	10%	1,000,000,000	100,000,000	10%	1,000,000,000	100,000,000	10%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1,000,000,000	100,000,000	10%	1,000,000,000	100,000,000	10%	1,000,000,000	100,000,000	10%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1,000,000,000	100,000,000	10%	1,000,000,000	100,000,000	10%	1,000,000,000	100,000,000	10%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1,000,000,000	100,000,000	10%	1,000,000,000	100,000,000	10%	1,000,000,000	100,000,000	10%
환경부 청주지방환경청	1,000,000,000	100,000,000	10%	1,000,000,000	100,000,000	10%	1,000,000,000	100,000,000	10%

(1) ①최근3년구매실적 탭 클릭
 (2) ②조회월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3) 조회하고자 하는 당월 실적은 익월(발송일자)에 제공됨
 (4) 조회된 내용 중 파일명 클릭 후 엑셀 다운로드 가능

○ 알림마당 - 공지사항

The screenshot shows the top navigation bar of the Alimadang website. The menu items are: 구매계획, 구매실적, 구매계획공표, **공지사항**, 알림마당, 실적수정, 기관/회원, and 교육/워크숍. Below the main navigation, there is a secondary menu with links like FAQ, Q&A, and 수평기관소식지. The '공지사항' link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 알림마당 - FAQ

알림마당 - FAQ

green DESK
녹색구매정보시스템

구매계획 구매실적 구매계획공표 통계정보 **알림마당** 실적수정 기관/회원 교육/위크샵

공지사항 **FAQ** Q&A / 수법기관소식지

Home > 알림마당 > FAQ

① 질문검색

인증거입 회원가입 및 정보등록 절차
 녹색제품정보시스템 정보제공 홈페이지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녹색제품의 정보를 등록 하고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회원가입 시 의무구매기관 사용자와 인증가입 사용자, 개인사용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녹색제품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녹색제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알림마당 하위메뉴 **FAQ** 클릭
 (2) ①**질문검색** 으로 녹색구매정보시스템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확인 가능

○ 알림마당 - Q&A

greenDESK

녹색구매정보시스템

구매계획

구매실적

구매계획공표

통계정보

알림마당

실적수정

기관/회원

교육/워크샵

공지사항

FAQ

Q&A

수범기관소식지

Home > 알림마당 > Q&A

조회구분

전체

검색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692	답변 녹색제품 미구매사유 가능여부 문의	이호찬	2017.10.10
1691	답변 신규실적 추가요청 관련 승인이 지연되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김도훈	2017.09.29
1690	답변 공금합니다	이동규	2017.09.21
1679	답변		2017.09.13
1678	답변 실적제외요청 및 실적추가요청 승인전에 대하여	김후남	2017.09.12
1677	답변 기존실적 제외요청 승인 요청	현소라	2017.09.08
1676	답변		2017.09.03
1675	답변 제품명 및 품도명 수정 건	건명	2017.09.01
1674	답변 신규실적 추가 삭제요청	송우원	2017.08.30
1673	답변 문의드립니다.	현소라	2017.08.30

문의하기

- 알림마당 하위메뉴 Q&A 클릭
- 녹색구매정보시스템 이용시 질의 가능
- 문의하기 버튼 클릭 후 게시글 작성

○ 알림마당 - 수범기관 소식지

greenDESK

녹색구매정보시스템

구매계획

구매실적

구매계획공표

통계정보

알림마당

평가

기관/회원

교육/워크샵

공지사항

FAQ

Q&A

수범기관소식지

Home > 알림마당 > 수범기관소식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	녹색구매 수범기관 소식지 VOL.15	장선영	2014.05.07	96
14	녹색구매 수범기관 소식지 VOL.14	장선영	2014.01.21	266
13	녹색구매 수범기관 소식지 VOL.13	박진환	2013.12.19	258
12	녹색구매 수범기관 소식지 VOL.12	박진환	2013.11.07	371
11	녹색구매 수범기관 소식지 VOL.11	박진환	2013.10.10	360
10	녹색구매 수범기관 소식지 VOL.10	박진환	2013.09.06	264
9	녹색구매 수범기관 소식지 VOL.09	박진환	2013.07.25	310
8	녹색구매 수범기관 소식지 VOL.08	박진환	2013.06.25	362
7	녹색구매 수범기관 소식지 VOL.07	박진환	2013.05.14	300
6	녹색구매 수범기관 소식지 VOL.06	박진환	2013.06.11	374

- 알림마당 하위메뉴 수범기관소식지 클릭
- 녹색구매 수범기관 소식지 분기별 게재

○ 실적수정 - 구매실적 수정요청 현황

- 구매실적수정요청 현황

(1) 실적수정 하위메뉴 구매실적 수정요청 현황 클릭
- 사용자가 로그인한 기관의 수정요청 (실적 제외, 추가 모두 포함) 세부현황에 대한 상세화면 확인 가능

(2) 조회 기능을 사용하여 실적년도, 요청일자, 인증구분, 승인구분으로 세부조회 가능

(3) 현재문서 내려받기 버튼을 통해 엑셀자료로 내려받기 가능

(4) '신규실적 추가요청(지자체 제외)', '기존실적 제외요청' 버튼 클릭을 통해 해당 메뉴로 이동 가능

○ 실적수정 - 구매실적 추가요청(1/2)

- 신규실적 추가요청-1 (해당기관: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단, 지자체는 조달실적 누락건만 추가 가능))

(1) 실적수정 하위메뉴 신규실적 추가요청 클릭
- 조달청, 녹색장터를 통한 구매 외 다른 경로를 통한 녹색구매 실적을 추가하는 경우 사용

(2) 구매방법 (자체구매/수외계약 또는 조달청)

(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작성 -> 소분류 하단 돋보기 버튼 클릭 후 해당 제품 클릭하면 대분류/중분류/소분류 모두 입력 됨

(4) 계약번호 입력, 공급요구일자 (또는 세금계산서 일자) 입력

(5) 총구매, 녹색구매 수량, 금액 입력 (총구매와 녹색구매 수량, 금액 동일하게 입력)
ex. 총구매 수량1 금액10(천원) / 녹색구매 수량1 금액10(천원)

○ 실적수정 - 구매실적 추가요청(2/2)

- 신규실적 추가요청-2 (해당기관 :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단, 지자체는 조달실적 누락건만 추가 가능))

구매실적수정요청

작성방법

1. 총구매액 제외건은 요청시 (-)표시한 금액으로 입력
2. 녹색제품 실적은 총구매액과 녹색구매액 두군데 모두 누락된 경우는 총구매액과 녹색구매액 부분만 표시 입력
3. 녹색제품 실적은 녹색구매액에만 누락된 경우는 녹색구매액에만 실적 입력
4. 각상사 실적은 원상대로 입력
5. 수정요청건은 향후 평가를 위한 것으로 승인후 조달청 구매실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정요청 목록

구매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계약번호	공급요구일자	총구매	녹색구매	작성	
						수량	금액(천원)	수량	금액(천원)
선택구매									

구매실적 수정요청 사유서

[구매실적 수정요청 사유서 표준양식 내려받기]

• 증명서류 안내

• 자체구분 : ①구매실적 수정요청사유서 1장, ②첨착한 요청할 예산내역제출서 1장(요청할 내역에 대한 경우 계약서 1부 추가), ③환경표지인증서(별지포함) 등

⑥ 파일 선택 : 선택된 파일 업로드

⑦ 파일 등록 : 파일 삭제

⑧ 승인 요청

(6) 파일 선택 버튼을 통해 내려받은 사유서 및 증명서류를 선택

- 사유서 : 구매실적 수정요청 사유서 표준양식 내려받기 클릭
- 증빙서류 : 자체구매한 모델명(규격)에 대한 구매요구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환경표지인증서(별지포함) 등
- 누락된 조달구매건을 추가할 경우 조달청 분할납품통지서 반드시 제출

(7) 파일등록 버튼 클릭

(8) 모든 작성을 마치고 승인요청 버튼을 클릭

○ 실적수정 - 기존실적 제외요청(1/2)

- 기존실적 제외요청-1 (해당기관 :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구매실적수정요청

수정요청건은 향후 평가를 위한 것으로 승인후 조달청 구매실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②

• 인증구분 : 전체

• 분류번호

• 납품요구번호

• 식별번호

• 공급일자

• 하위기관검색

검색

④ 선택실적 제외요청

③

기관명	구매분류명	인증구분	납품 요구번호	공급일자	G2B 분류번호	G2B 식별번호	품명	업체명	수량	금액 (단위:원)	
승인	울산광역시	토양개량제	일반	2117319710	20170213	10171501	21726664	화비토는조분석	전기산업 주식회사	991	3,453,520
승인	울산광역시	토양개량제	일반	2117314612	20170221	10171501	21726664	화비토는조분석	전기산업 주식회사	2,000	7,840,000
요청	울산광역시 통합건설본부	토양개량제	일반	2117338906	20170620	10179999	22894397	토양개량제	주식회사 정한그린테크	312	2,308,800
요청	울산광역시	토양개량제	일반	2117336845	20170609	10179999	22665034	토양개량제	(주)한국아쿠아서비스	600	45,516,000
요청	울산광역시	토양개량제	일반	2117337364	20170613	10179999	22831675	토양개량제	이업농업환경(주)	60	35,640,000
요청	울산광역시	토양개량제	일반	2117338218	20170616	10179999	22689137	토양개량제	삼송하이오텍	600	42,240,000
요청	울산광역시	토양개량제	일반	2117339554	20170623	10179999	22831675	토양개량제	이업농업환경(주)	9	5,346,000
승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 이정수사업소	수처리제	일반	2117330308	20170306	11101522	20204656	활성탄(활성탄)	심천리활성탄소(주)	1	456,505,000
승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회 이정수사업소	수처리제	일반	2117330443	20170324	11101522	20204656	활성탄(활성탄)	주식회사 카본텍	1	140,294,000
승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천 상정수사업소	수처리제	일반	2117330418	20170320	11101522	20204656	활성탄(활성탄)	(주)축석화학	1	170,717,000
승인	울산광역시 통합건설본부	교로유래그리드	관공	2117332750	20170522	11101701	21042779	슬라그그리트	동서건설(주)	61,864	575,953,840

(1) 실적수정 하위메뉴 기존실적 제외요청 클릭

- 사용자가 로그인한 기관의 세부 구매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됨

(2) 인증구분, 분류번호, 식별번호 등으로 조건조회가 가능

(3) 제외대상 구매내역 조회 후 좌측 선택박스로 제외대상 구매내역을 선택한 후

(4) 우측상단 '선택실적 제외요청' 버튼 클릭

○ 실적수정 - 기존실적 제외요청(2/2)

- 기존실적 제외요청-2 (해당기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공단)

구매실적수정요청

기존실적 수정요청 현황 / 신규실적 추가요청 / **기존실적 제외요청**

기존실적 제외요청

기관명	구매분류명	인증구분	납품 요구번호	공급일자	G2B 분류번호	G2B 식별번호	품명	업체명	수량	금액 (단위:원)
울산광역시 중합건설본부	고로올레그시엔트	관공	2117324083	20170403	11101701	20143984	올레그및재	동서개발(주)	0	16,905,000

증빙첨부

파일선택 선택한 파일 없음

• 증빙파일은 PDF, HWP, JPG, ZIP, XLS, XLSX 형식의 파일만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하스본 채워의 경우 포함된 유해물질은 필수 첨부

파일명 파일크기

파일을 등록해주세요.

'선택실적 제외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실적제외 사유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됨

- 제외 대상실적 마다 '실적제외 사유'를 선택할 수 있음
 - 1번 사유 : 필요할 경우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2~5번 사유 : 반드시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제외 사유가 선택지에 없는 경우 '5번' 선택 후, 메뉴 하단에 사유 입력가능
- 선택한 1~5번의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업로드 후
- '구매실적 제외요청' 버튼 클릭

○ 기관/회원 - 회원정보 변경

기관/회원 - 회원정보 변경

회원정보변경(의무구매기관)

기관정보

기관코드	6552519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관구분	위탁집행합동청 부기관
우편번호	03367 우편번호 찾기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릉로 215 6층 환경피해구제실

담당자정보 ※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정보 변경시 반드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shoon03	패스워드		패스워드 확인	
담당자성명		이메일			
부서명		직책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여부		☐ 네 ☐ 아니요	

- 기관/회원 하위메뉴 회원정보변경 클릭
- 인사이동으로 담당자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변경에서 변경후 수정 버튼 클릭

○ 기관/회원 - 회원탈퇴

기관/회원 - 회원탈퇴

회원탈퇴 하시면 본 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정보가 모두 삭제 됩니다.
회원탈퇴 버튼을 눌러 회원탈퇴를 진행해 주세요.

의무구매기관 회원 탈퇴

(1) 기관/회원 하위메뉴 회원탈퇴 클릭
(2) 녹색구매정보시스템 회원정보 삭제를 원할 경우 의무구매기관 회원 탈퇴 클릭

○ 기관/회원 - 기관등록신청

기관/회원 - 기관등록신청

신청자 성명 박상준 신청자 휴대전화 010-1234-5678
신청자 이메일 shoon@keel.re.kr 기관코드검색 [기관코드검색 바로가기]

기관정보입력 **첨부파일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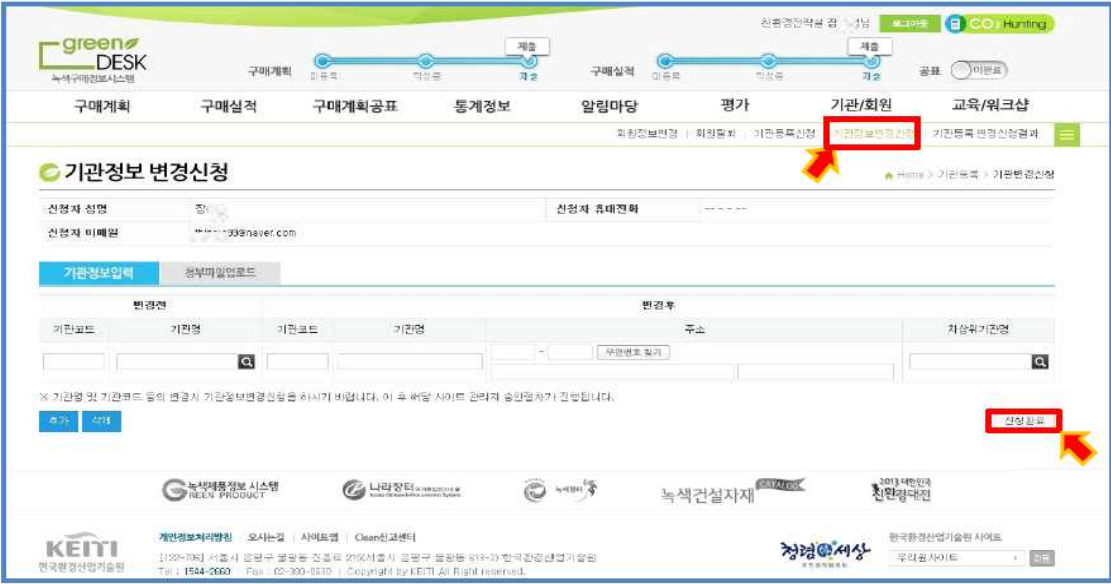
기관코드 기관명 주소 차상위기관명 최상위기관명

※ 신설기관일 경우 기관정보등록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 해당 사이트 관리자 승인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완료

(1) 기관/회원 하위메뉴 기관등록신청 클릭
(2)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 신규등록을 할 경우 사용
(3) 기관정보 입력 후 신청완료 버튼 클릭
(등록할 기관이 다수인 경우 첨부파일 업로드 메뉴 클릭하여 파일 업로드 가능)

○ 기관/회원 - 기관정보 변경신청



(1) 기관/회원 하위메뉴 기관정보변경신청 클릭
 (2) 기관정보 변경시 기관정보 변경전, 변경후 내용 입력
 (3) 기관정보 입력후 신청완료 버튼 클릭(추가버튼으로 10개 기관까지 등록 가능)

53

○ 기관/회원 - 기관등록 변경신청 결과



(1) 기관/회원 하위메뉴 기관등록 변경신청결과 클릭
 (2) 기관등록 또는 기관정보변경신청 결과 확인 가능

붙임 6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녹색제품 구매하기

- 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접속 - 전용몰 - 녹색제품 선택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 벤처나라

로그인 | 마이페이지

전체(품명,규격,업체명 등) 검색

도움말 | 상세검색

쇼핑카테고리 | 차량 | 4대관급자재 | PC | 가구 | 여행·세련 | 서비스전용몰 | 우수조달물품클럽 | 우수조달공동상표 | 정부조달문화상품 | 정부조달전문주

e-고객센터 | 원격지원 | 원격지원(콜센터) | MAS불공정거래신고

팝업존 3/22 < > +

다수공급자구매광고

공지사항

쇼핑도우미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및 등급화 결과 확정 안내

신재생에너지가토등의 1종
자석판학습교구
교육용놀이세트
열펌프의 1종
접속단자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판의 1종
차륜글착기외 3종

일반송출차(그랜저) 생산중단 예정...
생산중단에 따른 단종예정품목 알림(...)
생산중단에 따른 단종 예정품목 알림(...)
다수공급자계약(LED가로등, LED보...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일부모델 단...
홀름용천장재 생산중단 예정 알림(대...
주방기구 생산중단 예정알림 - (주)...

0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02.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03. 종합쇼핑몰 이용안내
04.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안내
05. 조달청구매 및 계약제도 안내
06. 종합쇼핑몰처음 이용시 PC환경설정
07. 종합쇼핑몰 오류조치방법
08. 상용SW 제3자단가계약제도 안내

전용몰

중기간경쟁제품
창업초기제품
우수조달물품
학교구매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정부조달전문주

사회적가치실현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보훈단체생산품
여성기업제품
전통문화상품

기술품질인증제품
NEP
GS
KS
특허실용신안
성능인증제품
자가품질보증제품
녹색기술제품
단체표준인증

녹색제품
GR
에너지절약
환경표지제품
고효율기자재
저공해자동차인증

MAS | 할인상품기획전 | 우수제품 | 할인상품기획전 | 전통문화상품 | 할인상품기획전 |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시민법인 | 정부조달마사회 | 여성기업제품공공구매

- ② '로그인'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 (공공기관 공인인증서 사용)

나라장터 목록정보 조달청

로그인 | 마이페이지

전체(품명,규격,업체명 등) 검색

도움말 | 상세검색

e-고객센터 | 원격지원 | 원격지원(콜센터) | MAS불공정거래신고

Home > 로그인

나라장터로그인

인증서로그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다소문자 및 한글/영어를 구분하여 입력하여 주십시오.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인증서 선택창에서 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작을 로그인이란?
지문인식 신원확인서를 통해 입찰서 또는 계약서 제출이 곤란한 사용자는 "예외작을 인증"을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외작을 인증"을 하여 예외로그인을 할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작을 로그인" 항목을 체크한 후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이용자등록

나라장터 인증서나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신규이용자 등록을 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등록

수요기관 인증서 등록
신규등록
추가등록

조달업체 인증서 등록
신규등록
추가등록

인증서 관리의 인증기관(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의 인증서 관리화면에서 관리하십시오. (가나다순 표기)

③ 녹색물품 카테고리 'GR인증', '환경표지제품' 선택

조달청 나라장터 목목정보 벤처나라

로그인 | 이력자등록

전체(품명, 가격, 업체명 등) | 검색 | 도움말 | 상세검색

Home > 전용물 > 녹색물품

전용물

전용물 카테고리

- 중기간경쟁제품
- 창업초기기업제품
-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 우수조달물품
- 기술품질인증제품
- 녹색물품**
 - 사무, 교육, 영상
 - 전자, 정보, 통신
 - 섬유, 고무, 위생
 - 화학, 소방, 안전
 - 전기, 사업, 계속
 - 기계, 설비
 - 시멘트, 아스팔트
 - 토목, 건축
 - 도로시설, 철도, 기타
- 학교구매품
- 우수조달공동상표
- 정부조달전통주
- 쇼핑 카테고리

전용물 녹색물품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등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의 물품 (현재 등록된 녹색물품은 관련법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GR | 에너지절약 | **환경표지제품** | 고효율기자재 | 저공해자동차인증

인증마크를 클릭하면 해당 인증을 가지고 있는 물품만 재검색됩니다.

환경표지제품 ☒ 본품 ☐ 별도옵션 | 품명, 가격, 모델, 회사 | 검색

품명바로가기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사무, 교육, 영상

사무기기	가전제품	일반비품 및 OA기구	지류
팩스기기 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 다기능복사기	텔레비전	군용사물함 라운지용의자 매트리스 보조책상 사물함 소파 수갈음탁자	일반행정공통서식 신문용지절지 화장실용화장지 프린트및복사용지 종필지

④ 조회된 상품 카테고리 중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선택

http://shopping.g2b.go.kr/

녹색제품 통합정보 관리 | KETI 업무포털시스템 | KETI 시스템 (keti.re.kr)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무, 교육, 영상

사무기기 | 가전제품 | 일반비품 및 OA기구 | 지류

팩스기기
전자복사기
다기능복사기
고정식연결의자

텔레비전

라운지용의자
매트리스
보조책상
사물함
소파
수갈음탁자
수갈고용수납장
스물의자
식탁
산발장
실습대
실험기구전열장
실험대
실험실용싱크대
류아용교구장
류아물탁자
종필탁자
이동식서가
이동식스탠데이불
교탁
교실용책상
고정식연결의자
강연대
O&A판이
이동형파일서랍
회의용탁자
학생용책상
파일함캐비닛
크레덴자

⑤ 구매하려는 상품 클릭 후 주문



I 녹색제품 구매지침 개요

II 녹색제품의 구매

III 행정사항

□ 녹색제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녹색장터’ 소개

- ‘녹색장터(shop.greenproduct.go.kr)’는 현재 인증중인 모든 녹색제품을 다양한 거래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녹색제품 전문 구매시스템
 - 녹색제품 통합정보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과의 실시간 정보 연계를 통해 최신의 녹색제품 현황과 정보제공
 -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편의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구매정보시스템 [GREEN DESK] (<http://gd.greenproduct.go.kr>) 와 연계되어 기관 구매 실적 자동집계 제공
 - 조달청 나라장터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조달청 분류체계를 최대한 반영
 - 타 법적 의무권장제도와 연계성을 고려, 녹색제품 중 중증장애인상품,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 별도 관리 가능
- 녹색제품 e-마켓(녹색장터) 서비스 개선
 -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녹색제품 접근성 제고 및 구매편리성 향상을 위해 기존 1개로 운영중인 녹색제품 전용 쇼핑몰을 3개로 확대하여 운영
 - 품목 및 제품 다양성, 가격비교 합리성, 쇼핑 편의성 제공

□ 접속방법

- ① 녹색제품 정보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을 통해 접속
 - 「메인페이지」 우측 QUICK LINK 의 ‘녹색장터’ 클릭
- ② 녹색장터 직접 접속 (<http://shop.greenproduct.go.kr>)
 - 녹색장터 링크페이지 배너를 통해 각 쇼핑몰로 이동

□ 이용방법

- 각 쇼핑몰 별로 신규 회원가입 후 이용
 - 기존 녹색장터 회원도 신규 회원가입하여야 함

Q 1. 녹색제품이란 무엇인가요?

제품의 생산·소비·폐기의 전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시키며 유해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하며, 환경표지 및 GR마크 인증제품이 이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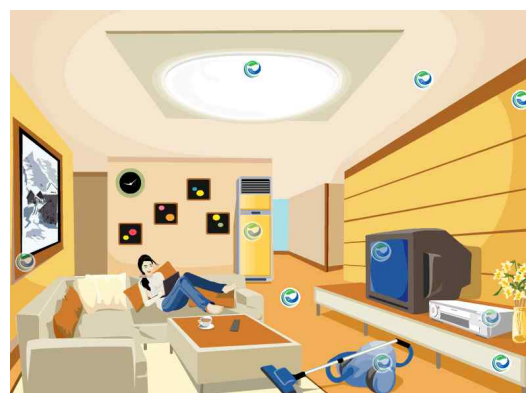


Q 2. 사용가능한 녹색제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사무실에서 사용가능한 녹색제품



○ 건축관련 녹색제품



○ 기타 녹색제품

- 가전제품 : 텔레비전, 에어컨디셔너 등
- 가정용품 : 화장지, 비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등
- 자동차용품 : 타이어, 엔진오일, 부동액, 비석면 운송부품 등

Q 3. 왜 녹색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녹색제품

- 녹색제품은 인체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 중금속 사용제한, 오염물질 방출량 제한 등을 통해 인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상품임

☐ 녹색제품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음

- 제품의 전과정비용을 고려할 때 녹색제품은 경제적일 수 있음
 - 녹색제품은 안전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제품으로 구입가격은 일반상품에 비해 다소 비쌀 수 있음
 - 그러나 녹색제품은 에너지효율, 절수, 폐기물 발생량 저감 등의 효과로 인하여 제품 사용 전과정을 고려한 전과정비용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경우가 많음
 - 또한 녹색제품은 인체 건강 및 안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한다는 점까지 고려할 경우 그 편익은 매우 큼

☐ 녹색제품으로 환경보전을 수행

- 녹색제품은 소비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녹색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
 -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품 환경성 관리 동향을 감안할 때 녹색제품 보급 확대는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

Q 4. 녹색제품은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http://shopping.g2b.go.kr>)내 “녹색제품 전용몰” 또는 “녹색장터(<http://shop.ecoi.go.kr>)”에서 녹색제품 구매 가능
 - ※ 녹색제품 구매실적 실시간 확인 가능
- 녹색제품 판매장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유통매장,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이용하거나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녹색제품 정보를 확인 후 일반 판매처를 통해 구입

Q 5. 녹색제품 관련 상세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녹색제품 구매지침(전국순회교육 시 지침서 배포) 및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gmc.greenproduct.go.kr)에서 확인 가능

Q 6.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Q 7. 타 법적 의무구매 제도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대상품목이나 녹색제품 외의 제품을 구매한 경우 이 부분도 총구매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 녹색제품 구매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실적에서는 해당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야 함
- * 녹색제품 구매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구매하고자 하는 녹색제품의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 없는 경우,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산간·도서지역 등 지리적 여건,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 등을 포함하는 것임

Q 8.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한 것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저공해 자동차”는 「녹색제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녹색제품(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에서 벗어나므로 이는 환경부로 제출하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음

Q 9. 녹색제품 의무구매가 적용되는 대상은 어느 기관인가요?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학교 포함)
-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
- * 위 기관뿐만 아니라 소속 산하기관에서도 녹색제품을 의무구매 하여야하며, 녹색제품구매법 개정예 따라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은 변경 가능

Q 10. 녹색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만 의무구매에 포함되는 건가요?

-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용역(서비스) 및 공사 계약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
- * 특히 인쇄, 청소용역, 건물 유지·보수, 사무기기 유지·보수, 그 밖의 녹색제품 구매가 포함된 용역 등의 경우에도 녹색제품 구매 및 실적집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Q 11. 환경부에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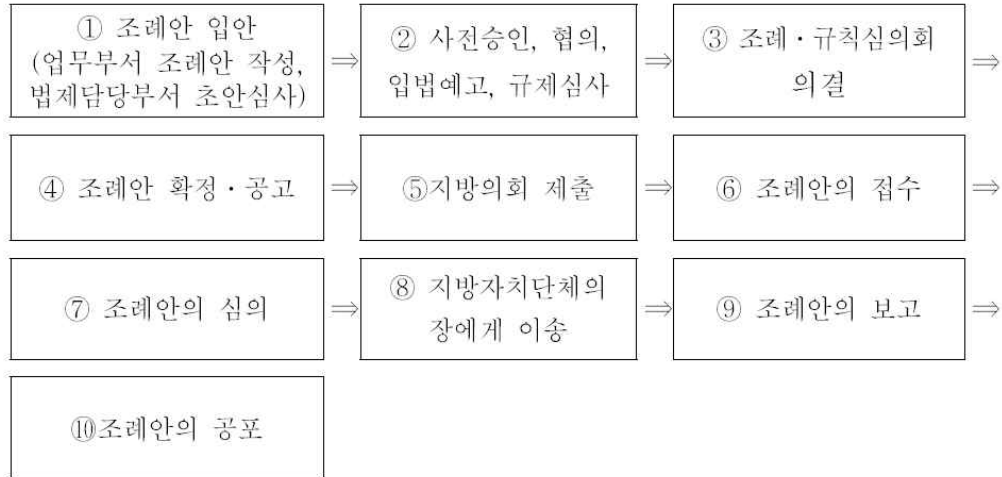
- 환경부에 제출된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유인제도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법 제10조에 따라 각종 기관의 **업무평가 자료**로 활용
- 환경부에서 녹색제품 구매업무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 평가 또는 감사 시 이행상황 수시 점검 실시 예정
-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실적은 **대국민 공개**

Q 12. 녹색제품 구매실적·계획을 어떻게 제출·공표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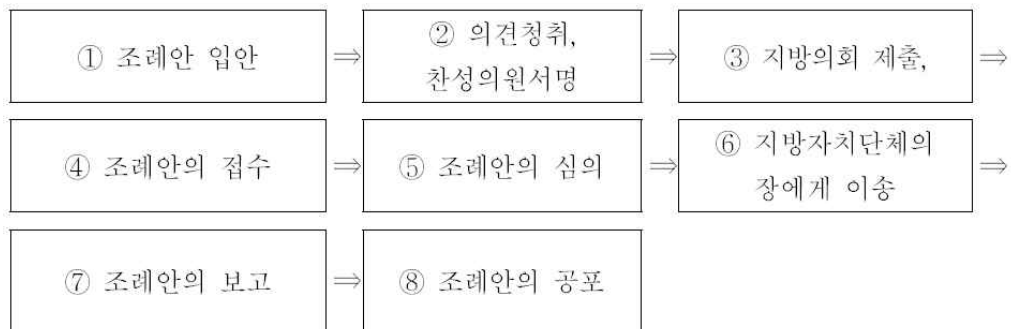
- 녹색구매정보시스템(gd.greenproduct.go.kr)에 소속·직속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실적집계 및 제출이 가능
- * 자체적인 실적집계시스템이 있는 경우 최종 실적제출 담당기관(본부)에서 동 시스템(gd.greenproduct.go.kr)을 통해 취합·합산 결과 제출 가능
- 동 시스템 공표현황 페이지(gd.greenproduct.go.kr 로그인 후 해당 메뉴 활용) 및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관보·공보 또는 기관지, 보도자료 등)에 공표

Q 13. 지자체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



②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과정



③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최종 공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Q 14. 녹색제품 구매·사용에 따른 환경·경제적인 편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 사무기기

	복사기 151,529원/대의 경제적 효과 발생 207.9kg/대의 CO ₂ 감소		복합기 136,319원/대의 경제적 효과 발생 147.9kg/대의 CO ₂ 감소
	레이저 프린터 263,258원/대의 경제적 효과 발생 60.3kg/대의 CO ₂ 감소		레이저 팩시밀리 160,953원/대의 경제적 효과 발생 488.6kg/대의 CO ₂ 감소
	데스크탑 컴퓨터 115,269원/대의 경제적 효과 발생 467.5kg/대의 CO ₂ 감소		노트북컴퓨터 22,331원/대의 경제적 효과 발생 92.5kg/대의 CO ₂ 감소

○ 사무가구

	책상 8,754원/개의 경제적 효과 발생 23.2kg/개의 CO ₂ 감소		책장/캐비닛 7,789원/개의 경제적 효과 발생 67.2kg/개의 CO ₂ 감소
	서랍 34,490원/개의 경제적 효과 발생 26.9kg/개의 CO ₂ 감소		탁자 9,838원/개의 경제적 효과 발생 45.2kg/개의 CO ₂ 감소
	OA칸막이 46원/개의 경제적 효 과 발생 0.9kg/개의 CO ₂ 저감		

Q 14. 녹색제품 구매·사용에 따른 환경·경제적인 편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 가전제품

	에어컨 63,235원/대의 경제적 효과 발생 292.2kg/대의 CO ₂ 감소		세탁기(드럼식) 30,040원/대의 경제적 효과 발생 314.6kg/대의 CO ₂ 감소
	세탁기(와류·교반식) 87,412원/대의 경제적 효과 발생 13.7kg/대의 CO ₂ 감소		식기세척기 15,198원/대의 경제적 효과 발생 61.8kg/대의 CO ₂ 감소
	냉장고 144,380원/대의 경제적 효과 발생 671kg/대의 CO ₂ 감소		텔레비전(LCD) 10,581원/대의 경제적 효과 발생 54.2kg/대의 CO ₂ 감소

○ 생활용품

	세탁용 비누 93원/kg의 경제적 효과 발생 5.6kg/개의 CO ₂ 감소		화장비누 10원/개의 경제적 효과 발생 0.6kg/개의 CO ₂ 감소
	두루마리 화장지 11원/개의 경제적 효과 발생 0.02kg/개의 CO ₂ 감소		종이타월 28원/개의 경제적 효과 발생 0.04kg/개의 CO ₂ 감소

○ 건축자재

	고로슬래그 시멘트 25,100원/MT의 경제적 효과 발생 668kg/대의 CO ₂ 감소		페인트 350원/kg의 경제적 효과 발생
	벽지 87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바닥장식재 117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벽 및 천장 마감제 363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		접착제 96원/kg의 경제적 효과 발생

□ 녹색제품 대상품목별 총 구매실적 조회방법

- ①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접속하여 로그인 (기관 인증서 로그인 필요)

The screenshot shows the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나라장터) homepage. The '인증서 로그인' (Certificate Login)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in the top right navigation area. The page includes search bars, navigation tabs, and various service announcements.

- ② 화면 중앙메뉴 중 통계분석정보 클릭(조달통합정보시스템 팝업)

The screenshot shows the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나라장터) homepage. The '통계분석정보' (Statistical Analysis Information) menu item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in the central navigation area. The page layout is similar to the previous screenshot, but with the central menu item highlighted.

③ 주요통계 클릭 후 왼쪽 트리메뉴의 물품 - 내자 메뉴 클릭, 녹색(친환경)제품 구매 실적 클릭



④ 조회기간 선택 후 조회 클릭(선택에 따라 파일형태로 다운로드 가능)

● 녹색(친환경)제품 구매실적
 *녹색(친환경)제품 실적보고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되는 자료로 환경표지, GR, 녹색제품만 해당됩니다.
 *제품구분:친환경(환경표지, GR), 비환경(친환경 제품제외)
 *수요기관 인증제품 구매실적 상세 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조회기간 2011년 01월 ~ 2011년 01월 □ 하위기관 포함. 화면출력(500라인 이하로 제한) [조회]

제품구분	연도	공공기관코드	공공기관명	물품분류번호	물품분류명	물품식별번호	물품식별명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0713236	신문용지절지, 우영, 54g/m², B4, 1형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0772141	신문용지절지, 제주교도소, A4, 54g/m²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0783445	신문용지절지, 산지피엔텍, power copy-A4, 파워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0812484	신문용지절지, 송림지류산업, SL신문용지, A4, 54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0812743	신문용지절지, 송림지류산업, SL신문용지, B4, 54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1135524	신문용지절지, 한솔 Paper, 신문용지 B4, B4, 54g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1135525	신문용지절지, 한솔 Paper, A4, 54g/m²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1144351	신문용지절지, 도영통상, 신문용지, A4, 54g/m², 2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1166334	신문용지절지, 새한페이퍼, A4, 54g/m², 2500H/스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1166335	신문용지절지, 새한페이퍼, B4, 54g/m², 2500H/스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1876379	신문용지절지, 양지종합물산, PRC-54A4, A4, 54g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1876380	신문용지절지, 양지종합물산, PRC-54B4, B4, 54g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1876419	신문용지절지, 영화페이퍼, 신문hy-030, A4, 54g/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1876420	신문용지절지, 영화페이퍼, 신문hy-031, B4, 54g/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1876539	신문용지절지, 대가야페이퍼, GYN-A454, A4, 54g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1876540	신문용지절지, 대가야페이퍼, GYN-B454, B4, 54g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1888341	신문용지절지, 도영통상, 신문용지2, B4, 54g/m², ;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1905658	신문용지절지, 무한지류, MH-NPA4, A4, 54g/m²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1905659	신문용지절지, 무한지류, MH-NPB4, B4, 54g/m²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2085344	신문용지절지, 한국근로장애인협회, NP-54-A4,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2086065	신문용지절지, 한국근로장애인협회, NP-54-B4,
친환경제품	2011	B55251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121999	신문용지절지	22144902	신문용지절지, 일원지류, Won 02, B4, 54g/m², 50I

* 제품구분은 친환경제품과 비친환경제품으로 구분되며, 친환경제품은 녹색 제품 대상품목 총구매내역(녹색제품 구매실적 아님)이며, 비친환경제품은 녹색제품 대상품목이 아닌 구매내역

○○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정 0000.00.00.

개정 0000.00.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도)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시장(도지사)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도)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도지사)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구매담당자로 둘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시장·군수)이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지사)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제3항에 따라 구청장(시장·군수)이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시장·군수)이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도지사)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과 제3항에 의거 구청장(시장·군수)이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도(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I 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 ③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도) 및 구(시·군)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도) 및 구(시·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③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등

제17조(기관 평가) ① 시장(도지사)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지사)은 구청장(시장·군수)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도지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가 우수한 구청장(시장·군수)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 「하수도법」 제6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도지사) 및 구청장(시장·군수)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도) 및 ○○구(시·군)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조례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안)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시장·군수(자치구청장 포함), 산하기관장(제4조제2호의 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시장·군수,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도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초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회계부서(또는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지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

□ 주요기능

- 민간부문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활동
 - 녹색소비자들의 녹색제품 생산·유통·품질 모니터링을 통해 녹색소비 실천 장애요인 개선
 - 녹색제품 생산·유통 현장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소비자 의견 수렴 채널 구축을 통해 녹색제품 신뢰성 확보 및 보급·확산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축제, 바자회 등), 환경행사 등을 통해 녹색소비생활에 대한 실천적 대안 제시
- 공공부문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활동
 - 지역 공공기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녹색구매 지침교육, 녹색제품 홍보 및 보급(판매) 추진
- 녹색제품 생산·유통을 촉진하는 기업 지원 활동
 - 녹색제품 인증 컨설팅, 유통매장 모니터링 등 협력 추진
 - 녹색제품 생산·유통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발 및 추진

< 녹색구매지원센터 주요 활동 >



소비자 녹색구매 교육



유아·어린이 녹색구매 교육



유통매장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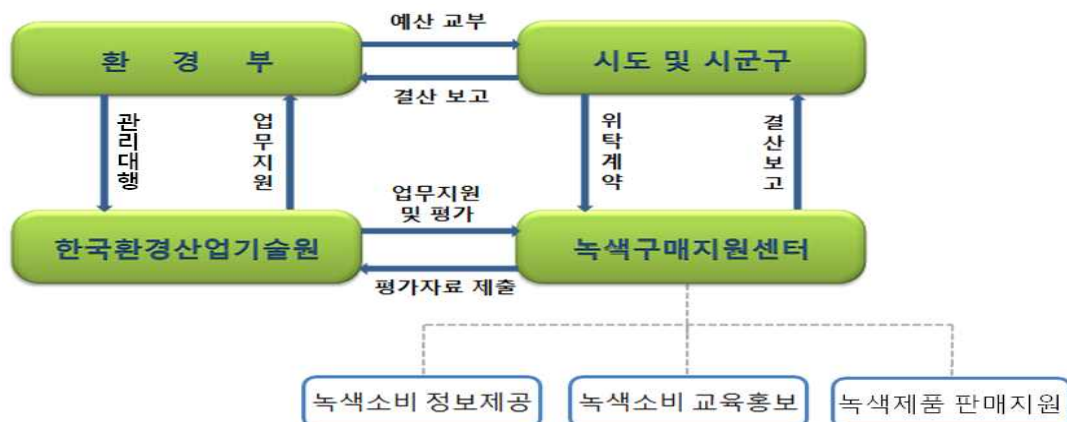


지역행사 녹색제품 전시홍보

○ 운영현황

- 안산 녹색구매지원센터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에이스타워 708호 (T.031-485-7733)
- 부산 녹색구매지원센터 : 부산시 중구 남포동 광복지하도상가 A56~58 (T.051-241-0906)
- 충북 녹색구매지원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36번길 105 4층 (T.043-223-5528)
- 제주 녹색구매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112 2층 (T.064-759-2160)
- 대전 녹색구매지원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지하 145 D가 48~49 (T.042-536-8845)
- 세종 녹색구매지원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세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02호 (T.044-865-4438)
- 광주 녹색구매지원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52 양동시장역사 안 (T.062-382-9882)
- 인천 녹색구매지원센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2 예술회관역 지하 (T.032-431-7890)

<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절차 >



□ 주요기능

○ 친환경 건설자재 세부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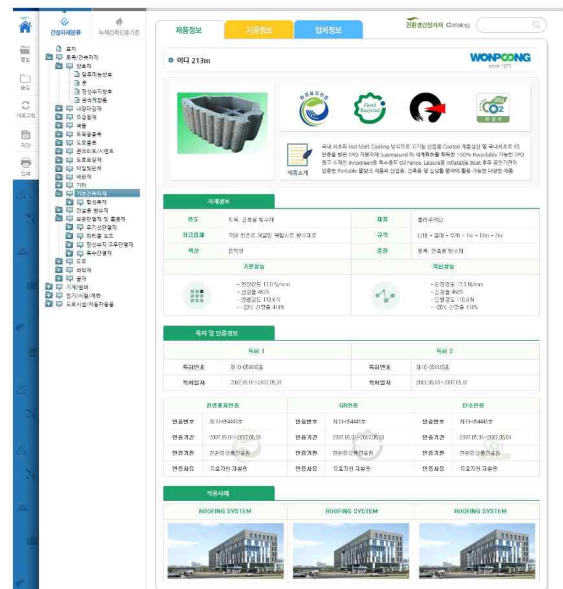
- 친환경 건설자재인증 자재 및 업체 세부정보 및 지역별업체 현황 등 정보제공과 전자카탈로그 지원으로 구매 편리성 제공
- 녹색건축인증에 적용되는 친환경 건설자재의 제품성능, 특허 및 인증 정보, 인증서 등 세부정보를 구축하여 설계자, 구매자 등에 제공

○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시스템(gmc.greenproduct.go.kr)

- 설계자, 구매자가 요구하는 친환경 건설자재의 다양한 정보로 구성



메인화면



전자카탈로그_자재정보



분류체계별 검색



환경표지 인증기준 및 구매실적 조회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시스템 주요화면>

□ 녹색건축인증제도 개요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도 발전경과

- 2002. 1. 건설교통부·환경부가 공동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작
- 2003. 1. 건설교통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업무용건축물과 주거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인증 시작
- 2005. 3. 학교건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작
- 2005. 11. 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설
- 2006. 4. 개정된 공동주택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2006. 9. 숙박 및 판매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 2008. 3. 건축법 제58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건축법 제65조(친환경건축물의 인증)으로 변경
- 2008. 5.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공포
- 2009.12.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공포
- 2010. 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10,000m² 이상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취득
- 2010. 7.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개정기준 시행
- 2011. 6. 친환경건축물인증기준 개정기준 시행
- 2012. 7.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공동주택)과 주택성능등급 기준의 통합기준 및 기존건축물 인증기준, 소형주택 인증기준 시행
- 2013.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 2013. 6.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기준 시행
-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m²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인증 의무취득
- 2016. 9. G-SEED 2016 녹색건축 인증 기준 개정기준 시행

□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2016. 8)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환경부, 국토교통부령 (2016. 9)
-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2016. 9)

□ 인증대상 및 등급

○ 인증대상

신축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의 모든 건축물
기존 -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 인증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

○ 인증등급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신축	주거용 건축물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단독주택	74점 이상	66점 이상	58점 이상	50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그린리모델링	주거용 건축물	69점 이상	61점 이상	53점 이상	45점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 인증유효기간

- 예비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완료 전
- 본 인증 : 인증일자로부터 5년

□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인센티브

※ 취득세_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취득세 감면 (구, 취득세 및 등록세)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에너지 성능점수 90점 이상 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15%	10%
에너지 성능점수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10%	5%

※ 재산세_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재산세 감면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15%	10%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10%	3%
그외	3%	-

※ 건축물 기준완화(용적률,조경면적, 건축물높이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 16조[개정 2016.1.1.])

구분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6% 이상 12% 이하	4%이상 8%이하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4%이상 8%이하	2%이상 4% 이하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가산점

- 녹색건축물 사업 실적에 따라 입찰 시 최대 1점까지 가산

※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 폐지(2015.7.1)

※ 서울시 녹색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2014년 폐지

□ 운영 체 계



□ 처리절차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건축주(건물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은 시공자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취득한 건축물의 경우는 항상 인증신청이 가능하고 예비 인증신청은 설계단계에서 해야 한다.

